



**dongguk** UNIVERSITY  **Course Catalog**

# 학사관련규정

학칙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 제 1 장 총 칙

**제1조(건학이념)** 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이념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① 본교는 건학이념에 따라 학술의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수하여 불교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노력하며 민족과 인류사회의 이상실현에 기여할 지도적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2011.8.10 개정)

② 제1항의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본교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2011.8.10 신설, 2014.5.14 개정)

1. 도덕적 지도자(Ethical Leader)
2. 창조적 지식인(Creative Thinker)
3. 진취적 도전자(Young Challenger)

**제3조(용어의 정의)** “학사과정”이라 함은 학사학위를, “석사과정”이라 함은 석사학위를, “박사과정”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학·석사통합과정”이라 함은 석사학위를, “석·박사통합과정”이라 함은 학사에게 박사학위를 각각 수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하며, “대학원과정”이라 함은 본교 대학원에 설치된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학·석사통합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 모두를 말한다. (2012.9.7 개정)

## 제 2 장 편 제

**제4조(대학 및 학부)** ① 본교에는 불교대학, 문과대학, 이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경찰사법대학, 경영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예술대학, 약학대학, 미래융합대학, AI융합학부, 다르마칼리지, 융합교육원, 불교문화대학, 인문대학, 과학기술대

학, 사회대학, 상경대학, 사범교육대학, 간호대학,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파라미타칼리지를 둔다.(2006.12.18, 2007.7.4, 2008.9.1, 2010.10.25, 2013.5.9, 2013.9.12, 2014.2.5, 2016.2.25., 2016.5.16., 2016.6.23., 2016.8.22., 2016.9.12., 2019.3.28., 2019.4.30., 2021.1.21., 2021.3.23., 2021.4.21. 개정)

② 각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둔다.(2006.12.18 신설, 2009.12.2 개정)

③ 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학부(이하 ‘독립학부’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2021.3.23. 신설)

④ 각 대학 및 학부에 설치한 학과(전공)의 편성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2006.6.1, 2006.12.18, 2007.7.4, 2007.12.11, 2008.9.1, 2009.12.2, 2010.10.25, 2011.8.10, 2012.2.13, 2012.4.2, 2012.9.7, 2013.2.7., 2013.5.9., 2013.9.12., 2014.5.14, 2014.10.16., 2015.8.27., 2016.2.25., 2016.4.12., 2016.6.23., 2016.8.22., 2017.4.3., 2018.2.26., 2018.3.30., 2019.7.16., 2020.2.18., 2020.3.27. 개정, 2021.3.23.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4.21., 2021.5.6. 개정)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전공)를 둘 수 있다. 계약학과(전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0.10.25. 신설, 2021.3.23. 제4항에서 이동)

**제4조의2** (학사과정의 전공이수방법) 학사과정 학생은 소속 학과(전공) 또는 학부가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의 허가를 받아 융합전공을 단일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20.1.22. 본조신설)

제5조(대학원) ① 본교에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인 영상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인 불교대학원, 행정대학원, 교육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법무대학원, 경찰사법대학원, 교육서비스과학대학원, 미래융합대학원, 불교문화대학원, 사회과학대학원, 경영대학원을 둔다.(2006.6.1, 2006.12.18, 2007.7.4, 2008.11.14, 2009.1.15, 2010.10.25., 2012.2.13., 2015.11.2., 2021.5.6., 2021.8.5. 개정)

②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두고, 학석사 통합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을 둘 수 있으며, 특수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두며, 각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별 학과(전공) 편성과 입학정원은 별표 2와 같다.(2006.6.1, 2006.10.9, 2006.12.18, 2007.12.11, 2008.5.23, 2008.9.1, 2008.11.14, 2009.1.15, 2009.4.15, 2009.12.2, 2010.2.2, 2010.5.20, 2010.10.25, 2012.2.13, 2012.4.2, 2012.5.17, 2012.9.7, 2013.2.7, 2013.2.28, 2013.5.9, 2013.9.12, 2014.2.5., 2014.5.14., 2014.10.16, 2015.2.26, 2015.8.27., 2015.11.2, 2015.12.30, 2016.2.25., 2016.6.23., 2016.8.22., 2016.9.12., 2016.10.31, 2016.12.12., 2017.1.20., 2017.5.15., 2017.6.16., 2017.9.25., 2018.2.26., 2018.7.10., 2018.10.29., 2019.3.28., 2019.4.30, 2019.7.16., 2019.11.4., 2020.1.22., 2020.2.12., 2020.5.1., 2020.7.14., 2020.12.10., 2021.1.24., 2021.3.23., 2021.4.21., 2021.5.6., 2021.7.12., 2021.8.5., 2021.10.8., 2022.1.26. 개정)

③ 대학원에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간에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학·연·산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계약학과(전공)를 둘 수 있다. 계약학과(전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0.10.25 신설)

**제5조의1<2014.2.5 삭제>**

**제5조의2(다르마칼리지)** 본교의 다르마칼리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14.2.5 신설)

**제5조의3(파라미타칼리지)** 본교의 파라미타칼리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14.2.5. 신설)

**제5조의4(융합교육원)** 본교의 융합교육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6.5.16. 신설, 2019.4.30. 개정)

**제6조(부속교육기관)** 본교의 부속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0.9 개정)

**제7조(사무조직)** 본교의 사무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0.9 개정)

**제8조(특별기구)** 본교의 특별기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06.10.9 개정)

**제9조(부속기관)** 본교의 부속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0.9 개정)

**제10조(연구기관)** 본교의 연구기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0.9 개정)

**제11조(의료원)** 본교에 의료원을 두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동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정한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동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기업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기업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2008.11.14 신설, 2013.5.9 개정)

**제13조(교직원)** ① 본교에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 등 교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 및 조교를 두며 그 정원은 따로 정한다. (2012.9.7., 2019.8.8. 개정)

② 제1항의 교원이외에 명예교수, 석좌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이하 “겸임교원 등”이라 한다.)을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019.8.8. 개정)

③ 교원은 대학(원), 학부(전공), 학과 또는 부속교육기관, 연구기관에 소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07.7.4., 2010.10.25, 2014.2.5 개정)

④ 본교의 각 대학원, 대학, 부속교육기관, 사무조직, 부속기관 및 연구기관에는 각각 대학원장, 학장, 부서 및 기관의 장을 둘 수 있다.

**제14조(교원의 교수시간)** ① 교원(강사, 겸임교원 등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교수시간은 학년도별 30주의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1인당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직 담당 등의 개인 사정이나 학과 형편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9.8.8. 개정)

- ② 강사 및 겸임교원 등의 교수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9.8.8. 신설)

## 제 3 장 학사 일반

**제15조(학년도와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이를 제1학기 와 제2학기로 나눈다.(2021.10.8. 개정)

1. 제1학기 : 3월 1일(학기개시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학기개시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다만, 1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일반학기 외에 방학 중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무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학부(학과, 전공),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학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2021.1.24. 신설)

**제16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2018.2.26. 신설)

- ②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2018.2.26. 개정)
- ③ 총장은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2015.8.27., 2018.2.26. 개정)
- ④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34조(학점 부여기준)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수업시간을 준수하여 교과별 수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2018.2.26. 신설, 2020.1.22. 개정)
- ⑤ 법정공휴일 및 특별한 사유로 인한 휴강으로 매 학기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일 경우 보강을 시행하여야 한다. (2015.8.27. 신설, 2018.2.26. 개정)

**제17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여름 및 겨울방학

2. 개교기념일(5월 8일)

3. 법정공휴일 (2015.8.27 개정)

- ② 총장은 필요한 경우 1항의 정기휴업일을 변경하거나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 ③ 휴업일인 경우에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18조(수업연한)** 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약학과는 6년(12학기), 한의예과 및 의예과는 2년(4학기)으로 한다.(2021.10.8. 개정)

- ②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수업연한은 각 2년(4학기), 학·석사통합과정은 6년(12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4년(8학기)으로 한다. 다만, 특수대학원은 2년 6개월(5학기)로 한다. (2012.9.7 개정)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서비스과학대학원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4년(8학기), 학·석사통합과정은 학사과정 4년과 석사과정 4년을 합산하여 8년(16학기)으로 한다. 다만, 학·석사통합과정에서 제52조 제2항의 학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사과정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2012.9.7. 신설, 2021.5.6. 개정)
- ④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2.9.7 개정)

1. 학사과정 : 1년
2. 석사과정 : 6개월
3. 학·석사통합과정 : 1년 6개월
4. 석·박사통합과정 : 1년
- ⑤ 석사과정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1년 이상을 수업연한으로 하는 단기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2020.12.10. 신설)

**제19조(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한의예과 및 의예과는 4년(8학기), 한의학과 및 의학과는 8년(1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장애학생의 경우 등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4.2.5., 2015.8.27., 2020.12.10. 개정)

- ② 한의학과, 의학과로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 이수 후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2014.5.14, 2015.8.27 개정)
- ③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대학원의 재학연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2.9.7 신설)

## 제 4 장 입 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20조(입학시기)**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기는 매 학기 초 3주 이내로 한다.

**제21조(입학자격)** ① 학사과정 및 학·석사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2012.9.7., 2021.10.8. 개정)

②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2.9.7 개정)

③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④ 전임교원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본교 대학원 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소속 학과의 대학원 과정에는 입학할 수 없다. (2021.1.24. 개정)

⑤ 2002학년도이후 교육대학원에 신·증설된 전공에는 현직교직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다. 다만,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하는 전공(표시과목이 없는 전공)의 경우는 현직교직원이 아닌 자도 입학할 수 있다.

⑥ 학·연·산협동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위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고 국내 산업체나 연구기관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며 입학지원시 본교와 학·연·산협동과정을 운영하는 해당기관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과정 학생정원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비재직자의 입학은 허용할 수 있다.

**제22조(입학전형)**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3조(입학허가)** ① 입학은 각 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내신에 따라 총장이 허가한다.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한 내에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납부하고,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제24조(합격취소 및 입학취소)** ① 합격 또는 입학이 허가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의 학적 상태(합격, 입학허가, 재학, 휴학, 제적, 졸업)와 상관없이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2013.2.7., 2021.3.23. 개정)

1.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2021.3.23. 신설)
  2.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2021.3.23. 신설)
  3. 입학전형에서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응시자에게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등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2021.3.23. 신설)
  4. 학칙 제21조에 규정된 입학자격 또는 모집요강의 전형별 지원 자격에 미달함이 사후 확인된 경우(2021.3.23. 제1호에서 이동 및 개정)
  5. 관계 법령 및 모집요강에 명시된 대입 지원방법 위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021.3.23.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6. 입학사정에 사용한 일체서류에 결함이 있거나 주요사항을 누락한 경우(2021.3.23. 제3호에서 이동)
  7. 입학에 필요한 절차를 필하지 않은 경우(2021.3.23.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 ② 심의절차, 사후처리 등 합격취소 및 입학 취소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13.2.7 신설)

**제25조(정원의 입학)** ①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②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정원 외로 학사과정, 대학원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2013.9.12 신설)

④ 정원의 입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6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학사과정 제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는 자는 4학기 이상의 대학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한다.
- ③ 본교와 전문대학 간의 연계교육협약체결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정원의 10%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다.(2009.12.2 신설)
- ④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학사과정 제3학년으로 학사 편입학할 수 있다.
- ⑤ 일반대학원의 편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2006.12.18 개정)
  - 1. 석·박사 2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에서 동일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해당 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 2. 석·박사 3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에서 동일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해당 학위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 3.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에서 동일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해당 학위과정을 3학기 이상 이수한 자(2017.9.25. 신설)
- ⑥ 전문대학원의 편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2006.12.18 신설)
  - 1. 석·박사 2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해당 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 2. 석·박사 3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계열, 동일 또는 유사학과의 해당 학위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 ⑦ 특수대학원의 편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석사 2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
  - 2. 석사 3학기 편입 :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한 자(학·군 교류협정에 의한 국방대학교 수료자 포함)
- ⑧ 타 대학에서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는 편입학할 수 없다.
- ⑨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및 석사과정으로의 편입학은 허가하지 않는다.(2012.9.7 신설)
- ⑩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성적경고제적자 및 자퇴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할 수 있다. 다만, 성적경고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경주캠퍼스 6개월 이상, 단, 한의학과, 의학과 제외)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2009.12.2, 2010.2.2 개정)
- ③ 성적경고제적자가 재입학 후 다시 성적경고제적이 되었을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기회를 부여한다. (2009.12.2 신설, 2015.8.27 개정)
- ④ 징계처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⑤ 재입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재입학금을 납부하는 등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한다.
- ⑥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학생으로서 학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으며, 학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하여 석사과정에 진입한 경우와 의학전문대학원 제적자에 대하여 정원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12.9.7 신설)
- ⑦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5 장 등 록

**제28조(등록)** ① 학생은 학기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되고 학적을 상실한다.

- ② 학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사과정은 8학기(약학과는 12학기), 일반·전문대학원 석사 및 박사과정은 4학기, 학·석사통합과정은 12학기, 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특수대학원은 5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8학기(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은 8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여야 한다. (2012.9.7., 2021.10.8. 개정)
- ③ 대학원 석·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을 수료한 자의 경우 필요시 연구등록 또는 수료생등록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2019.4.30. 신설, 2021.1.24. 개정)
- ④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자는 수료시부터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속하여 최대 2학기까지 연구등록하고,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는 학위논문 지도를 받을 수 없으며,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2010.10.25., 2019.4.30. 개정)

**제29조(등록금)** ① 등록금의 금액과 납부기일은 총장이 정하여 공시하며, 세부 사항은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013.2.28 개정)

- ② <2013.2.28 삭제>
- ③ <2013.2.28 삭제>
- ④ <2013.2.28 삭제>
- ⑤ <2013.2.28 삭제>

**제30조(등록금의 반환)** ① <2013.2.28 삭제>

- ② <2013.2.28 삭제>
- ③ <2013.2.28 삭제>

## 제 6 장 교과와 이수

**제31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② 수업시간표는 학기의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총장이 정한다.

**제32조(교육과정)** ① 학사과정의 교육과정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성하며 각 학과(전공)별 이수기준 등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사회봉사활동, 현장실습,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등과 같이 정규교육과정 외에 특별히 개설하는 교과목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2019.1.15. 개정)
- ④ 선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대학원과정에서는 필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인증제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2007.12.11 신설, 2013.2.28 개정)

1. 학과(부)에서는 일반교육과정과 병행하여 국내의 교육과정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인증을 받는 인증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인증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부)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교육과정과 구분되는 별도의 전공명을 부여할 수 있다.

3. 인증제 교육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⑥ 교수와 학생이 함께 관심분야에 대한 진로를 설계하고 전공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방형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2007.12.11. 신설)

- ⑦ 교육과정 편성 또는 개편 시 사회수요, 핵심역량 및 학습성과 측정 결과, 강의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2018.1.25. 신설)

- ⑧ 학과(전공)에서는 전공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본교 전공교육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2019.11.4. 신설)

- ⑨ 미래수요를 반영한 최신의 특성화 학문 분야 개발을 통해 모듈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2020.12.10. 신설)

**제33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마다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하지 않은 자는 그 학기의 수업을 받을 수 없다.

- ② 수강과목의 변경 및 취소 등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4조(학점부여기준)**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실기과목과 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은 1학기 30시간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학사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18학점 이내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대학은 21학점 이내, 졸업학점이 160학점 이상인 대학은 24학점 이내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등의 경우에는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6조(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취득학점)** ① 일반대학원 학생은 매 학기 최대 9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2006.12.18 개정)

- ② 전문대학원 학생은 매 학기 다음 각호와 같이 이수할 수 있다. 다만, 계절수업 등으로 학기당 최대수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2.18, 2007.12.11, 2008.5.23, 2012.9.7., 2013.2.28., 2021.4.21. 개정)

1. 영상대학원 : 최대 12학점
2. 경영전문대학원 : 최대 13학점
- ③ 특수대학원 학생은 매 학기 6학점까지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2학점이상 추가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별로 따로 정한다.(2021.1.24. 개정)
- ④ 선수과목은 매 학기 6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37조(타 대학 등과의 교류)** 국내의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과정별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본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8조(학위과정의 연계)** ①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는 과목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학석사통합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등과 같이 학사과정의 교육과정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교육과정은 이를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2.9.7 개정)

**제39조(학점인정)** ① 편입학한 자가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교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학점만을 인정한다.

- ② 재입학자의 퇴학 또는 제적전 취득학점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 ③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7 장 시험과 성적

**제40조(시험)** ① 시험은 학기당 2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6.10.31. 개정)

③ 총장이 따로 정한 과목은 소정의 시험에 의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제41조(성적)** ① 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

제물 평가성적 등을 참작하여 부여하고,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6.10.31. 개정)

- ②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여 표기한다.

등급	A <sup>+</sup>	A <sup>o</sup>	B <sup>+</sup>	B <sup>o</sup>	C <sup>+</sup>	C <sup>o</sup>	D <sup>+</sup>	D <sup>o</sup>	F	P,W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불계

**제42조(학점의 인정과 취소)** ① 학사과정에서는 "D<sup>o</sup>"등급이상과 "P"를, 대학원과정에서는 "C<sup>o</sup>"등급이상과 "P"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의학전문대학원은 학사과정의 학점 인정과 취소 기준을 따른다. (2015.8.27 개정)

- 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다만, 인정된 학점이라도 그것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다.
- ③ F학점은 과락으로 평점에는 가산하나, 수료학점에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 제 8 장 전공결정, 전과, 복수전공 등(2020.1.22. 개정)

**제43조(전공결정)** 대학, 학부별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은 1학년 2학기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2.18.개정)

**제44조(전과)** 학사과정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학과(전공)로 옮기는 것은 전입받는 학과(전공) 입학정원의 50%(사범계열은 별도로 정함, <삭제>)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07.12.11, 2010.2.2. 개정)

**제44조의2(대학원생의 학과 소속 변경)**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 소속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2020.12.10. 개정)

1. 학제 개편, 지도교수의 소속 변경, 대학재정지원사업 참여 등 교무운영상 필요한 경우 (2020.12.10. 개정)
2. 적성 등의 사유로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2020.12.10. 신설)
3.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20.12.10. 제2호에서 이동)



(2019.7.16. 본조신설)

**제45조(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 전공)** ① 학사과정 학생은 본인 소속 학과(전공)에서 제공하는 전공이외에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학과(전공)에서 제공하는 전공(이하 “복수전공”이라 한다)
2.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연계하여 제공하는 전공(이하 “연계전공”이라 한다)(2020.1.22. 개정)
3.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이하 “융합전공”이라 한다).(2020.1.22. 신설)
4.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이하 “학생설계전공”이라 한다)(2020.1.22. 제3호에서 이동)

② 복수전공, 캠퍼스간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07.12.11., 2020.1.22. 개정) (2020.1.22. 제목개정)

**제46조(부전공)** 학사과정 학생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본인 소속과 다른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취득한 경우 부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7.1.20. 개정)

## 제 9 장 휴학·복학·제적 및 자퇴

**제47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에 따른 군복무, 임신·출산 및 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소정기간이 아니더라도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2014.2.5 개정)

② 휴학은 1회에 학사과정은 2학기, 대학원과정은 1학기, 통산하여 학사과정인 경우 6학기(약학과, 의학과 및 한의학과는 8학기)를,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은 4학기, 영상대학원 석·박사과정과 경영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4학기를, 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은 8학기(학·석사통합과정의 학사과정은 4학기)를, 석·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에 따른 군복무와 임신·출산 및 육아, 창업을 사유로 휴

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2009.4.15, 2009.12.2, 2011.1.24., 2012.9.7., 2014.2.5., 2021.10.8. 개정)

③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복학)** ① 복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9조(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각 학장 또는 대학원장에게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각 학장 또는 대학원장의 내신에 따라 총장이 제적한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제3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제5호의 해당자 중 정원의 외로 입학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제적을 유보할 수 있다.(2020.12.10. 개정)

1. 휴학기간 만료 후 등록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등록금을 소정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국내 다른 대학(교)에 이중 입학한 자
4. 질병 또는 다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5.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재학 중 성적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단, 서울캠퍼스만 적용) (2013.2.7., 2018.2.26., 2020.1.22. 개정)
6. 한의예과, 한의학과, 의예과, 의학과 학생으로서 재학연한 내에 본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2015.8.27 개정)
7.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제27조 제2항에 의해 재입학한 후 다시 성적경고 통산 2회를 받은 자(단, 서울캠퍼스만 적용)(2015.8.27., 2018.2.26. 개정)
8. 징계에 의해 퇴학 처분을 받은 자
9. 한의학과, 의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으로서 재학 중 유급을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를 받은 자 (2010.10.25 신설, 2012.9.7 개정)
10. <삭제, 2018.2.26.>
11. 미래융합대학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 입학생으로서 재학 중 재직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자 (단,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재직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인정하여 제적을 유예하며, 이 기간은 교무학생처장, 교무학생지원팀장이 참여하는 미래융합대학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2017.1.20. 신설, 2018.10.29.,

2019.4.30., 2019.9.16. 개정)

## 제 10 장 졸업과 학위수여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 ① 학년별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전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학칙과 학칙시행세칙에서 정한 과정을 모두 마치고, 총 평점평균이 2.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009학년도 이후 사범대학 신입생의 경우 교원자격검정령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2009.4.15, 2009.12.2, 2010.5.20, 2012.2.13., 2013.5.9., 2015.11.2., 2016.6.23., 2017.1.20., 2017.2.20., 2018.2.26., 2020.7.14., 2020.12.10., 2021.4.21., 2021.10.8., 2022.1.26. 개정)

대학 및 학부(과)	졸업학점	학년별 수료를 위한 최저이수학점					
		1	2	3	4	5	6
사회과학대학(광고홍보학과 제외), 예술대학(스포츠문화학과), 미래융합대학	120	30	60	90	120	-	-
불교대학, 문과대학, 이과대학, 법과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광고홍보학과), 경찰사범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공과대학(컴퓨터공학전공(심화과정), 정보통신공학전공(심화과정) 제외), 사범대학, 예술대학(스포츠문화학과 제외) 불교문화대학, 인문대학, 과학기술대학, 사회대학, 상경대학, 사범교육대학, 간호대학(간호학과 제외)	130	33	65	98	130	-	-
간호학과, 공과대학(컴퓨터공학전공(심화과정), 정보통신공학전공(심화과정))	140	35	70	105	140	-	-
한의학과, 의학과 (한의예과, 의예과)	160	40 (40)	80 (80)	120	160	-	-
약학과	215	35	72	111	147	185	215

② 제1항의 수료 조건과 다음의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졸업을 인정하며,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총장이 별도로 정한 대학 또는 학과의 경우 특정 외국어에 관한 소정의 시험 및 강의이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2006.12.18 개정)
2.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을 포함한다)에 통과하여야 한다.
3. <2016.8.22. 삭제>

③ 서울캠퍼스의 경우, 교직과정 및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었다라도 해당 과정의 이수를 마치기 위하여 졸업

연기를 희망할 경우 이를 허가 할 수 있다.(2009.4.15 신설, 2010.10.25 개정)

- ④ 경주캠퍼스의 경우, 졸업 예정인 자가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졸업연기를 희망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0.10.25 신설)

제52조(대학원과정의 수료와 졸업) ① 일반대학원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으로서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졸업을 위해서는 이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의 경우 학위논문 제출에 상응하는 대체수단을 정할 수 있다.(2019.7.16. 개정)

② 전문대학원의 수료와 졸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8.5.23, 2011.1.24, 2012.9.7, 2013.2.28, 2013.5.9, 2014.2.5 개정)

1. 영상대학원

가.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으로서 석사과정은 36학점 이상(멀티미디어학과, 영화영상제작학과 콘텐츠비즈니스전공(중문)은 30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2021.4.21. 개정)

나. 졸업을 위해서는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 또는 졸업작품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의 경우 학위논문 또는 졸업작품 제출에 상응하는 대체수단을 정할 수 있다.(2021.4.21. 개정)

2. 경영전문대학원 :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으로서 전문석사과정은 4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3. 의학전문대학원

가. 석사과정 : 총 평점평균이 2.0이상으로서 전문석사과정은 1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개설된 전공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나. 학석사통합과정 : 총 28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총 평점평균은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 각각 2.0이상으로서 학사과정은 120학점 이상, 전문석사과정은 16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개설된 전공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다. 졸업을 위해서는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라. 학석사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서 나목에서 정한 학사학위 수여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학원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

④ 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3조(학위의 종류) ① 본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와 각 과정별 학위명은 별표 3, 대학원 과정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대학원 협동과정 이수자는 이수 교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06.6.1, 2006.10.9, 2006.12.18, 2007.12.11, 2008.5.23, 2008.9.1, 2008.11.14, 2009.4.15, 2009.12.2, 2010.2.2, 2010.5.20, 2010.10.25, 2012.2.13, 2012.4.2, 2012.5.17, 2012.9.7, 2013.2.7, 2013.2.28, 2013.5.9, 2013.9.12, 2014.2.5, 2014.5.14, 2014.10.16., 2015.2.26, 2015.8.27, 2015.11.2. 2016.2.25., 2016.6.23., 2016.8.22., 2016.9.12., 2016.10.31., 2016.12.12., 2017.1.20., 2017.4.3., 2017.5.15., 2017.9.25., 2018.2.26., 2018.3.30., 2018.7.10., 2018.10.29., 2019.3.28., 2019.7.16., 2019.8.8., 2019.11.4., 2020.1.22., 2020.2.12., 2020.3.27., 2020.5.1., 2020.7.14., 2020.12.10., 2021.1.21., 2021.1.24., 2021.3.23., 2021.4.21., 2021.5.6., 2021.7.12., 2021.8.5., 2021.10.8., 2022.1.26. 개정)

② 학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인증 학위과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이 충족된 자에 대해서는 별표 3에 따른 학위를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2022.1.26. 신설)

③ 전문대학원에 개설한 학술학위 석.박사과정의 학사운영은 일반대학원에 준한다.(2006.12.18. 신설, 2022.1.26. 제2항에서 이동)

제54조(학위의 수여) 학위는 매년 봄(2월) 또는 가을(8월)에 수여하며,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2.18 개정)

제55조(명예박사학위) 학술 발전과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6조(시간제등록학생 및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시간제등록학생 및 학점은 행체 학습과목 수강생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령 및 관련지침에 따라 본교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취득학점의 누계가 졸업에 필요한 기준 학점에 달한 경우 본교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3.5.9. 개정)

**제57조(공동·복수학위수여)** ①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하거나, 외국대학과 복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동명의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3.2.7 신설)

**제58조(학위수여의 취소)** 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학위수여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11 장 학생활동, 장학금, 포상, 징계

**제59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업에 전념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며, 이 학칙과 따로 정하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기본적인 기능인 수업과 연구를 포함한 제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인 행위와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60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가정이 빈곤한 자, 법령이 정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급여절차와 등록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1조(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특히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62조(징계)** ① 학생이 학칙을 위반했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징계는 견책,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다만 징계처분 전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면제할 수 있다.

**제63조(학생회)** ① 학생은 학생자치역량 신장과 건전한 학풍 조성을 위해 학생회 등의 학생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학생회 등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4조(간행물)** 학생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5조(학생지도)** 학생 및 학생자치단체의 학업 및 대학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 제 12 장 공개강좌와 특수학생 등

**제66조(공개강좌)** ① 직무,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공개강좌 이수자에게는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공개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7조(시간제등록학생)** ① 학사과정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본교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선발인원은 당해년도 총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2013.5.9 신설)

③ 시간제등록학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8조(연구생)** ①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특수과목 또는 과제에 관하여 청강을 희망하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각 과정의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각 대학원은 연구생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와 시험을 실시하며, 입학 후 소정의 청강료를 부과한다.

③ 연구생은 해당 연구과목에 한하여 수업에 출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연구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그 연구과목에 대한 연구실적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본교 대학원 연구생이 과정 이수 후 해당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대학원장은 소속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연구생의 이수 학점을 대학원 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2021.1.24. 신설)

⑤ 연구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21.1.24. 제4항에서 이동)

**제68조의2(장애학생지원)** 장애학생이 교내활동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장애학생 지원체제를 구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011.1.24 본조 신설)

## 제 13 장 위원회

**제69조(교무위원회)** ① 본교에 교무위원회(이 조에서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구성은 따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포상 및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
4. 교수회 결의사항에 관한 사항
5. 예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0조(대학원위원회)** ① 본교에 설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 조에서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대학(원)장과 회의를 구성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반대학원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2007.12.11, 2010.10.25 개정)

③ <2007.12.11 삭제>

④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2006.12.18 개정)

1. 대학원의 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2. 대학원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학원 및 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사무는 본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다.(2012.2.13, 2013.2.7 개정)

⑥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각 대학원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장은 각 대학원장으로 한다.(2006.12.18 개정)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 14 장 교수회

**제71조(구성)** 본교에 전체 교수회와 각 대학별 대학교수회를 두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제72조(소집과 개회)**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대학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73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에 관한 사항
2. 수업과 연구에 관한 사항
3. 졸업에 관한 사항
4. 시험에 관한 사항
5.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
6. 학생의 지도에 관한 사항
7. 총장 또는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4조(특별위원회)필요한 경우, 전체교수회 및 대학교수회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15 장 보칙

**제75조(학칙개정)** ① 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정안을 사전에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이 개정하여 공포한다.

② 개정된 학칙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세칙)** 이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따로 정한다.

### 부 칙 (2006.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학칙 중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 및 졸업) 제1항의 수료에 필요한 최저평점평균은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고, 졸업학점이 130학점으로 감소된 학과의 기존 재적생은 2008년 2월 졸업자부터 졸업학점을 130학점으로 적용한다.

②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학과(전공) 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재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2006.6.1. 2010.10.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별표1>과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별표4>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7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정보산업대학 컴퓨터공학전공에 전공선택한 자로서 2010년 8월말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과(전공) 명칭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7학년도 1학년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각각 정보산업대학 컴퓨터공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3.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대학(원)명칭과 학과(전공)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② 법정·복지대학 법학과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 칙(2006.10.9 개정)

이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6.12.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석사과정 폐지에 따라 기존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 경영전문대학원 신설에 따라 폐지되는 경영대학원 재적생은 종전학칙을 적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3. 이 개정학칙 시행이전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석사과정과 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재적생은 2007학년도에 한하여 경영전문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영전문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② 학칙 개정(2006.6.1)에 따라 2007학년도부터 폐지되는 산업대학원 재적생에 대한 경과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사항은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산업대학원 기존 재적생은 2006년 6월 1일 이전 학칙을 적용한다.
  2. 인쇄화상전공 재적생은 2007년 3월 1일부터 언론정보산업대학원 인쇄출판학과 인쇄화상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3. 인쇄화상전공 이외 전공 재적생은 본교 타 특수대학원의 유사학과(전공)으로 소속 변경할 수 있다.
- ③ 제54조(학위의 수여), 제70조(대학원위원회) 개정학칙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07.7.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의 언론정보대학원은 200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07.12.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6조(학위수여) <별표2>의 개정에 따른 서울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대학) <별표1>과 제56조(학위수여)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문과대학 ①철학과, ②윤리문화학과, ③독어독문학과, ④영어영문학전공, ⑤영어통·번역전공, 이과대학 ⑥생명과학과, 사회과학대학 ⑦광고홍보학과, 경영대학 ⑧국제통상학전공, 생명자원과학대학 ⑨식물생명공학과, ⑩산림자원학과, ⑪식품공학과, ⑫식품자원경제학과, 공과대학 ⑬전자공학과, ⑭생명·화학공학과, 정보산업대학 ⑮정보통신공학과, ⑯컴퓨터공학과, ⑰산업시스템공학과, 영상미디어학부 ⑱영화영상전공, ⑲게임멀티미디어공학전공, ⑳공연예술학부에 입학 또는 전공 선택한 자로서 2011년 8월말까지 졸업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 학과(전공) 명칭을 종전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8학년도 1학년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각각 문과대학 ①철학전공, ②윤리문화학전공, ③독어문화학전공,

- ④영어문학전공, ⑤영어·통번역학전공, 생명과학대학 ⑥생명과학전공, 영상미디어대학 ⑦광고홍보학과, 사회과학대학 ⑧국제통상학전공, 생명과학대학 ⑨식물생명공학전공, ⑩환경생태공학전공, ⑪식품공학전공, ⑫식품산업시스템전공, 공과대학 ⑬전자공학전공, ⑭화공생물공학과, ⑮정보통신공학전공, ⑯컴퓨터공학전공, ⑰산업시스템공학과, 영상미디어대학 ⑱영화영상학과, ⑲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 ⑳연극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②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별표4>의 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학칙은 2008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단과대학·학부·학과·전공 명칭변경 및 소속변경, 단과대학 신설, 야간강좌 폐지에 따른 다음 사항은 우선 적용한다.

가. 기존 나노생명과학부 및 이공계열 재적생은 입학당시 모집단위내에서 학과 및 전공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사회복지학과 및 2006학년도 법정계열(법학과 제외) 신입생부터 사회대학 재적생으로 본다.

다. 나노소재화학전공, 안전환경시스템공학전공, 친환경에너지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과, 국제관계학전공, 전자상거래학전공 재적생은 각각 나노소재화학과, 안전환경시스템공학과, 에너지·환경대학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정보통신공학부, 정치외교학전공, 정보경영학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라. 기존 야간강좌 학부 복학생이 전공을 선택할 경우, 해당학년의 편제에 따라 중간의 동일 학부 및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 다만, 학생이 야간강좌에 재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한다.

3. 사회과학대학원 법학과 폐지에 따라 기존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제53조의 <별표4>에서 행정대학원의 세부전공 학위명칭 변경사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2008. 2. 28 개정)

이 개정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 5. 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36조 제2항 1호는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제52조의 1호 영화영상학과와 수료학점은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③ 북한학전공의 학위명칭(북한학학사, 북한학석사, 북한학박사), 협동과정<석사과정>인 정보나노기술학과, 대학원 석·박사과정인 국어교육학과와 역사교육학과는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④ 제53조(학위의 종류)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기획과정의 명칭 및 학위는 2008년 9월에 이수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2. 문화학과과정과 문화공학과과정은 2007년 3월부터 신설한 것으로 본다.

⑤ 식물생명공학전공(이학사), 환경생태공학전공(이학사), 의생명공학전공(공학사)의 개정 학위명칭은 2008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08.9.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대학원) 제2항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학칙은 2009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바이오학부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 부 칙 (2008.11.14 개정)

이 개정 학칙은 200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09. 1. 15 개정)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4. 1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09학년도부터 폐지되는 사회과학대학원 경영학과 재적생에 대한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한 사항은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 사회과학대학원 경영학과 재적생은 2009학년도 3월1일부터 신설 산업경영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산업경영대학원으로 소속 변경된 사회과학대학원 경영학과 재적생은 종전학칙을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09. 12. 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 및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1> 및 <별표3>의 규정개정은 2010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적용한다.
  2.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학과(전공) 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② 제5조(대학원) <별표2> 및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2> 및 <별표4>의 규정개정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2009학년도이전 입학생의 소속 학과(전공) 명칭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3.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학과(전공) 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③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의 규정개정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 ④ 제47조(휴학)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0. 2. 2 개정)

## 부 칙 (2010. 5. 2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대학원) <별표2> 및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2> 및 <별표4>의 규정개정은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2009학년도이전 입학생의 소속 학과(전공) 명칭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3.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학과(전공) 명칭은 학과(전공)의 요청에 따라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2010. 10. 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 제4항 및 제5조 제4항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② 제28조(등록), 제29조(등록금)의 개정학칙은 2011학년도 1학기 등록자부터 적용한다.
- ③ 제51조 제4항은 2010년 가을(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 ④ 제53조 별표4에서 정한 무역학과 박사학위명은 2011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하며, 2010년 8월 졸업생까지는 경영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 ⑤ 제5조 별표2 및 제53조 별표4 개정 규정 중 경영전문대학원에 해당되는 내용은 201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⑥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학칙은 2011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학부·학과·전공 명칭변경 및 폐지에 따른 다음 사항은 우선 적용한다.
    - 가. 미술학부에는 불교미술학과, 미술학과를 두며, 기존 미술학부 및 미술학과 재적생은 세부실기전공에 따라 불교미술학과, 미술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나. 컴퓨터공학부 학부명칭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기존 컴퓨터학전공, 멀티미



디어공학전공, 컴퓨터멀티미디어학부 재적생 소속 명칭은 종전규정에 의한다.

다.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재적생은 원자력및에너지공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라. 철학·논술 전공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2011. 1. 2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2조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영화이론 전공의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하되, 영화학 전공으로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 부 칙 (2011. 5. 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1조 및 제51조는 개정 일로부터 시행하되,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 별표3은 개정 전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부 칙 (2011. 8. 1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3항 별표 1의 개정내용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2. 2. 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1조 졸업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대학 졸업학점 변경은 2011학년도 신입생, 2012학년도 2학년 외국인 편입생, 2013학년도 일반 및 학사편입생부터 적용한다.
2. 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졸업학점 변경은 2012학년도 신입생, 2013학년도 2학년 외국인 편입생, 2014학년도 일반 및 학사편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대학 및 학부)제3항 <별표1>의 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학칙은 2012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2. 학부·학과·전공 명칭 변경, 신설, 폐지에 따른 다음 사항은 우선 적용한다.

가. 인문과학대학 미술학부 불교미술학과 재적생은 불교문화대학 불교미술학부 재적생으로 보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나. 인문과학대학 미술학부 미술학과 재적생은 인문과학대학 미술학부 재적생으로 보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 인문과학대학 인문학부 문화예술철학전공은 폐설된 철학·논술 전공과 별도의 전공으로 보며, 기존 인문학부 철학·논술 전공 및 철학전공 재적생 중 2012학년도 이후 복학생은 인문학부 내 전공 중 재적하고자 하는 전공의 재적생으로 본다.

라. 바이오학부 생명과학전공, 생명공학전공 명칭 및 학위는 2012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마. 이공학부는 2012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바. 이공계열 나노소재화학학과 재적생은 이공학부 신소재화학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사. 이공계열 안전환경시스템공학과 재적생은 안전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부 칙(2012. 4. 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 별표1과 제53조 별표 3 개정내용은 2013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 한다.

② 제5조 별표2의 개정내용은 2012년 3월부터, 제53조 별표 4의 개정내용은 2012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2. 5. 1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별표2 개정내용은 기존 재적생도 일괄 적용한다.

## 부 칙(2012. 9. 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2년 9월 7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53조 별표 3 및 별표4의 경과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3은 2012년 8월 졸업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2. 별표4의 일반대학원 및 국제정보대학원은 2012년 8월 졸업생부터 소급적용한다.
  3. 별표4의 영상대학원은 2012년 2월 졸업생부터 소급적용한다.
- ② 이 개정 학칙 중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과 관련된 사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3. 2. 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에 따른 서울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별표2> 및 <별표4>의 개정 학칙은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②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의 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별표1> 및 <별표3>의 개정 학칙은 2013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조경학과 조경학사는 2013년 2월 졸업생부터 소급적용한다.

③ 이 개정 학칙 중 제24조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은 기존의 학생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 칙(2013. 2. 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별표2>의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영화학전공의 일반대학원 이전에 따른 경과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영화학전공 재적생은 일반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재적생으로 변경한다.
2.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영화학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전공의 재적생은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재적생으로 변경한다.

## 부 칙(2013. 5. 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제1항 개정내용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개정내용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③ 제53조 별표4의 개정내용 중 미술학과 박사학위는 2008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④ 제56조(시간제등록학생 및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개정내용은 2012학년도 1학기 수강생부터 적용한다.
- ⑤ 제67조(시간제등록학생) 제2항 개정내용은 2013학년도 1학기 시간제 등록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3. 9. 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제3항 <별표1>의 개정에 따른 경주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학칙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학부·학과 명칭 변경, 통합, 신설, 폐지에 따른 다음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 가. 불교문화대학 불교미술학부 재적생은 인문과학계열 미술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나. 인문과학대학 미술학부 재적생은 인문과학계열 미술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다. 과학기술대학 정보통계학과 재적생은 자연과학계열 응용통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라. 과학기술대학 정보통신공학부 재적생은 자연과학계열 정보통신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마. 과학기술대학 컴퓨터공학부, 컴퓨터멀티미디어학부 및 공학대학 컴퓨터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재적생은 자연과학계열 컴퓨터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사. 에너지환경대학 원자력및에너지공학부 재적생은 자연과학계열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②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 개정내용 중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학위명은 2013학년도 가을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4. 2. 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다르마칼리지 신설 및 교양교육원 폐설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 승인 시점인 2014년 1월 23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의 제1항 및 제52조의 제2항은 기존 재적생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③ 제47조 창업 휴학은 2014학년도 1학기 휴학부터 적용하며, 임신 출산 및 육아휴학은 2013년 11월 11일부터 적용한다.

④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개정내용은 사회복지학과 2013학년도 신입생 및 불교 사회복지학과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4. 5. 1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개정내용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3> 중 약학과, 융합소프트웨어 연계 전공 학위명 개정내용은 2015학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대학원) <별표2>와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 개정내용 중 문화예술대학원 관련 내용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③ 제19조(재학연한)제2항 개정내용은 기존 재적생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④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제2항제3호 개정내용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4.10.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및 <별표4>의 개정 내용에 따른 서울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학부 및 전자전기공학부 개정 내용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연극학부 및 영화영상학과 학위명 개정 내용은 2015학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3. 일반대학원 연극학과 학위명 개정 내용은 2015학년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4.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개정 내용은 2015년 3월 1일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 문화예술대학원 개정내용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2013학년도 및 2014학년도 신입생은 구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및 <별표4>의 개정 내용에 따른 경주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학칙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일반대학원 개정 사항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테크노경영과정, 국제비즈니스과정 기존 재적생의 학사관리대학은 경영계열로 본다.

3.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불교풍수문화학과에 대한 사항은 생사문화학과 풍수지리전공 재학생에게도 소급적용한다.

## 부 칙(2015. 2. 2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 별표2 및 제53조 별표4의 개정 내용에 따라 폐지되는 문화예술대학원 불교예술문화학과 한국음악전공의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 부 칙(2015. 8. 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과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개정 내용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캠퍼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및 스포츠문화학과 개정내용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경주캠퍼스 스포츠과학과 및 행정경찰공공학과 개정내용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소급하여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5. 11. 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5조(대학원) <별표2>와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에 따른 서울캠퍼스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개정 학칙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행정대학원 개정 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51조의 개정내용은 서울캠퍼스 스포츠과 학과 재적생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 부 칙(2015. 12. 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 2. 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 개정내용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6. 4. 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 개정내용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6.5.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6.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경주캠퍼스 단과대학·학과 명칭변경 및 단과대학 소속변경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대학 및 학부) 제3항 <별표1>, 제53조(학위의 종류) 제1항 <별표3> 개정에 따른 각 호의 경주캠퍼스 단과대학·학

과 명칭변경 및 단과대학 소속변경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1. 인문과학계열에서 인문대학으로 명칭변경
2. 자연과학계열에서 과학기술대학으로 명칭변경
3. 사회과학계열에서 사회대학으로 명칭변경
4. 경영계열에서 상경대학으로 명칭변경
5. 자연과학계열 정보통신공학과, 기계부품시스템공학과에서 과학기술대학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로 소속 변경 및 명칭변경
6. 사회과학계열 글로벌경제통상학부, 호텔관광경영학부에서 상경대학 글로벌경제통상학부, 호텔관광경영학부로 소속변경

(부칙개정 2016.9.12.)

## 부 칙(2016.8.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3조 <별표3> 개정내용 중 웹설계및응용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실감미디어공학전공, 글로벌서비스비즈니스전공, 스마트관광전공, 정보미디어경영전공 개정 사항은 2013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6.9.12. 개정)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10.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1조(성적)의 개정 내용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대학원) 제2항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제1항 <별표4>의 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학과 및 전공 개·폐설 관련 내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경찰사법대학원 개정내용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되, 일정요건을 충족한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2016.12.12. 개정)

**제1조(시행일)** 개정 학칙은 2016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내용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7.1.20. 개정)

**제1조(시행일)** 개정 학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 <별표4>의 개정사항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7.2.20. 개정)

**제1조(시행일)**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의 개정 내용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7.4.3. 개정)

**제1조(시행일)**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 내용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학과 명칭은 학과의 요청 및 학생의 동의를 조건으로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 내용 중 미래융합대학 사회복지상담학과의 명칭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의 개정 내용은 2018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경찰사범대학, 미래융합대학 치안과학융합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관련 내용은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7.5.1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내용 중 문화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미술경영전공 관련 내용은 2017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

다.

## 부 칙(2017.6.16. 개정)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9.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의 내용 중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문화예술대학원 실용예술학과 뷰티아트케어전공과 관련된 내용은 2018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8.1.25. 개정)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2.26. 개정)

**제1조(시행일)** 개정 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 내용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학과 명칭은 학과의 요청 및 학생의 동의를 조건으로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5조(대학원) <별표2>와 제53조(학위 및 학위명) <별표4>의 개정내용 중 행정대학원과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관련 내용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50조(제적)의 개정 내용은 2017학년도 2학기 제적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④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의 졸업학점 개정내용은 201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8.3.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 내용은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학과 명칭은 학과의 요청 및 학생의 동의에 따라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2018.7.10. 개정)

이 개정 학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8.10.2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0조(제적)의 개정 내용은 2017학년도 미래융합대학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9.1.15. 개정)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3.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원 불교아동심리치료학과 폐지, 경영대학원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신설에 관한 내용은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2 및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 에 따라 폐지되는 불교문화대학원 불교아동 심리치료학과 재적생은 중전 학칙을 적용하 며,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세부사항은 따 로 정한다.

## 부 칙(2019.4.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4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28조(등 록) 제3항은 2019학년도 2학기 등록부터 적 용한다.

② <별표2>는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부 터 시행한다.

## 부 칙(2019.7.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7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제44조의2 (대학원생의 학과 소속 변경)과 관련하여 학 교 정책에 따른 재학생의 소속변경시, 변경 전 소속 학과(전공)의 졸업기준을 적용할 수 있 다.

② 제5조(대학원) <별표2>의 일반대학원 상담 코칭학과 협동과정 신설과 관련된 내용은

2020학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5조(대학원) <별표2>의 법무대학원 전공 명칭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2019학년도 2학 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④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명 변경과 관련된 내용은 2019년 가을 학위 수여 시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9.8.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8월 8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중 제53조(학위의 종류) 제1항 별표3의 개정내용은 2019학년 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9.9.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9월 1 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9.11.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11월 4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한문불전번 역학과에 관한 사항은 2020학년도 1학기 신 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경영전문대학원 인사조직컨설팅 MBA 신설 에 관한 사항은 2020학년도 3월 1일부터 적 용한다.

## 부 칙 (2020.1.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1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중 융합전공 관련 사 항은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별표2> 및 <별표4>의 특수대학원 전공명은 2020학년도 신입생부 터 적용한다.

## 부 칙 (2020.2.12. 개정, 2020.5.1. 부칙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중 융합전공 관련 사항은 202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별표2> 및 <별표4> 개정 사항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0.2.18. 개정)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3.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 및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의 개정 내용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학과 명칭은 학과의 요청 및 본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2020.5.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일반대학원 과학치안학과, 사회과학대학원 스포츠과학과에 관한 내용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대학원 윤리문화학과 폐지에 따른 기존 재적생의 소속은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 부 칙 (2020.7.1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 제1항 개정 내용은 2021년 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대학원 통계학과 학과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0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0.12.1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의 <별표3> 융합전공 개정사항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대학원)의 <별표2> 및 제53조(학위

명)의 <별표4>의 개정 내용은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19조(재학연한) 제1항의 의예과 재학연한 개정 내용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④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의 멀티미디어공학과 졸업학점 개정 내용은 2022년 봄 졸업자부터, 정보통신공학전공(일반과정) 졸업학점 개정 내용은 2023년 봄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1.1.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중 제4조(대학 및 학부)의 <별표1> 및 <별표3>의 서울캠퍼스 개정 내용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학과 명칭은 학과의 요청 및 본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 부 칙 (2021.1.2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대학원)의 <별표2> 및 제53조(학위명)의 <별표4>의 개정 사항은 2021학년도 후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제약 바이오산업학과 관련 사항은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일반대학원 체육학과 관련 개정사항은 시행일로부터 즉시 적용한다.

## 부 칙 (2021.3.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중 서울캠퍼스 대학원 편제 관련 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경주캠퍼스 대학원 편제 관련 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1.4.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

1> 및 제53조 <별표3>의 개정 내용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학과 명칭은 학과의 요청 및 학생 본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1.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 내용 중 간호대학 신설과 간호학과의 단과대학 변경 개정내용은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의과대학 간호학과의 재적생의 소속은 간호대학 간호학과로 변경한다.

2.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 내용 중 불교문화대학 불교아동보육학과의 재적생은 학과의 요청 및 학생 본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2022년 3월 1일부터 사회대학 아동청소년교육학과로 소속 변경한다.

3.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의 개정 내용에 따라 모집중지되는 한국음악과, 신소재화학전공, 의생명공학전공, 빅데이터·응용통계학전공 재적생은 종전 학칙을 적용하며, 모집중지 학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관련 조항은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③ 제36조 및 제52조의 개정 내용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1.5.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4조(대학 및 학부) <별표1>의 개정 내용은 2022학년도 간호학과 및 자유전공학부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대학원) <별표2> 서울캠퍼스 대학원 편제 관련 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1.7.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대학원) <별표2>와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 개정내용은 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1.8.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대학원) <별표2>와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 개정내용은 2022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학칙 중 전문·특수대학원 정원조정에 관한 내용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1.10.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대학원) <별표2>,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 내용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약학대학 6년제 관련 개정 내용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편입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2022.1.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1.2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대학원) <별표2>의 개정 내용에 따라 신설되는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협동과정은 2022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부터 시행한다.

② 제5조(대학원) <별표2> 및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4>의 개정 내용에 따른 경주캠퍼스 일반대학원 학과 명칭 변경 사항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학과의 요청 및 학생의 동의에 따라 기존 재적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51조(학사과정의 수료와 졸업) 제1항 표의 경주캠퍼스 간호학과 개정 내용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기존 재적생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④ 제53조(학위의 종류) <별표3>의 개정 내용에 따라 폐지되는 연계전공 재적생의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위 수여는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별표1> 학사과정 학과편성과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학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학부 및 학과	입학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정원
불교 대학	불교학부 문화재학과	63 15	불교학부	68	불교학부	68	불교학부	68	불교학부 불교사회복지학과	68 15
	계	78	계	68	계	68	계	68	계	83
문과 대학	국어국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학전공	60	국어국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학전공	60	국어국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학전공	60	국어국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학전공	60	국어국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학전공	60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86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86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86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86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86
	일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30 40 17 30	일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30 40 17 30	일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30 40 17 30	일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30 40 17 30	일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30 40 17 30
	계	263	계	263	계	263	계	263	계	263
이과 대학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33 36 40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33 36 40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33 36 40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33 36 40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33 36 40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전공 반도체과학전공	63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전공 반도체과학전공	63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전공 반도체과학전공	63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전공 반도체과학전공	63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전공 반도체과학전공	63
	계	172	계	172	계	172	계	172	계	172
법과 대학	법학과	129	법학과	129	법학과	129	법학과	129	법학과	129
	계	129	계	129	계	129	계	129	계	129
사회 과학 대학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95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95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95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95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95
	경제학과	84	경제학과	84	경제학과	84	경제학과	84	경제학과	84
	국제통상학과	68	국제통상학과	68	국제통상학과	68	국제통상학과	68	국제통상학과	68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미디어학전공	72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미디어학전공	73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미디어학전공	73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미디어학전공	73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미디어학전공	73
	식품산업관리학과	25	식품산업관리학과	26	식품산업관리학과	26	식품산업관리학과	26	식품산업관리학과	26

대학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50 15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50 15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50 15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50 15	광고홍보학과	50
	계	409	계	411	계	411	계	411	계	396
경찰 사법 대학	경찰행정학부 경찰학전공 산업보안전공 범죄과학전공 교정학전공	69	경찰행정학부 경찰학전공 산업보안전공 범죄과학전공 교정학전공	69	경찰행정학부 경찰학전공 산업보안전공 범죄과학전공 교정학전공	69	경찰행정학부 경찰학전공 산업보안전공 범죄과학전공 교정학전공	69	경찰행정학부 경찰학전공 산업보안전공 범죄과학전공 교정학전공	69
	계	69	계	69	계	69	계	69	계	69
경영 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120 84 66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120 84 66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120 84 66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120 84 66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120 84 66
	계	270	계	270	계	270	계	270	계	270
바이오 시스템 대학*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40 42 37 54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40 44 38 54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40 44 38 54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40 44 38 54	생명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40 44 38 54
	계	173	계	176	계	176	계	176	계	176
공과 대학	전자전기공학부	162	전자전기공학부	162	전자전기공학부	162	전자전기공학부	162	전자전기공학부	172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175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175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175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175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170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지공학과	52 67 55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지공학과	54 67 55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지공학과	54 67 55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지공학과	54 67 55	건설환경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기계로봇에-지공학과	54 67 55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58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60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60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60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60
	산업시스템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융합에-쿠사소재공학과	66 45 40	산업시스템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융합에-쿠사소재공학과	76 45 40	산업시스템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융합에-쿠사소재공학과	76 45 40	산업시스템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융합에-쿠사소재공학과	76 45 40	산업시스템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융합에-쿠사소재공학과	76 40 40
	계	720	계	734	계	734	계	734	계	734
	사범 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29 29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30 30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30 30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30 30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대학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역사교육과	30	역사교육과	30	역사교육과	30	역사교육과	30	역사교육과	30
	지리교육과	29	지리교육과	30	지리교육과	30	지리교육과	30	지리교육과	30
	수학교육과	29	수학교육과	30	수학교육과	30	수학교육과	30	수학교육과	30
	가정교육과	30	가정교육과	30	가정교육과	30	가정교육과	30	가정교육과	30
	체육교육과	36	체육교육과	38	체육교육과	38	체육교육과	38	체육교육과	38
	계	212	계	218	계	218	계	218	계	218
예술 대학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60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60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60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60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60
	연극학부 연극전공 뮤지컬전공	50	연극학부 연극전공 뮤지컬전공	50	연극학부 연극전공 뮤지컬전공	50	연극학부 연극전공 뮤지컬전공	50	연극학부 연극전공 뮤지컬전공	50
	영화영상학과 스포츠문화학과	40 22	영화영상학과 스포츠문화학과	40 22	영화영상학과 스포츠문화학과	40 22	영화영상학과 스포츠문화학과	40 22	영화영상학과 스포츠문화학과	40 22
	계	172	계	172	계	172	계	172	계	172
약학 대학*	약학과	30	약학과	30	약학과	30	약학과	30	약학과	30
	계	30	계	30	계	30	계	30	계	30
미래 융합 대학	(융합보안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	1 1 1	(융합보안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	1 1 1	(융합보안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	1 1 1	(융합보안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	1 1 1	(치안과학융합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	1 1 1
	계	3	계	3	계	3	계	3	계	3
시융합 학부	시융합학부	78								
서울 캠퍼스	합계	2,778	합계	2,715	합계	2,715	합계	2,715	합계	2,715

※ \*단과대학은 바이오메디캠퍼스에 둔다.

※ ( )는 야간강좌 개설 전공임

대학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불교 문화 대학	불교학부		불교학부	43	불교학부	43	불교학부	60	불교학부	60
	불교학전공	30	명상심리상담학과	20	명상심리상담학과	20	불교아동보육학과	35	불교아동보육학과	35
	불교문화콘텐츠전공	20	불교아동보육학과	35	불교아동보육학과	35	한국음악과	23	한국음악과	25
	명상심리상담학과	20	한국음악과	19	한국음악과	21				
	계	70	계	117	계	119	계	118	계	120

대학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인문 대학	웹문예학과	35	인문콘텐츠학부		인문콘텐츠학부		인문콘텐츠학부		인문콘텐츠학부	
	인문콘텐츠학부		국어국문학전공	33	국어국문학전공	33	국어국문학전공	33	국어국문학과	35
	국사학전공	35	국사학전공	35	국사학전공	35	국사학전공	35	국사학과	35
	고고미술사학전공	40	고고미술사학전공	40	고고미술사학전공	40	고고미술사학전공	40	고고미술사학과	40
	글로벌어문학부		글로벌어문학부		글로벌어문학부		글로벌어문학부		글로벌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45	영어영문학전공	45	영어영문학전공	45	영어영문학전공	45	영어영문학과	45
일어일문학전공	30	일어일문학전공	30	일어일문학전공	30	일어일문학전공	30	일어일문학과	30	
중어중문학전공	45	중어중문학전공	45	중어중문학전공	45	중어중문학전공	45	중어중문학과	45	
디자인미술학과	65	미술학과	55	미술학과	55	미술학과	55	미술학과	55	
스포츠건강과학부		스포츠과학과	45	스포츠과학과	45	스포츠과학과	45	스포츠과학과	45	
스포츠과학전공	50									
스포츠의학전공	20									
계	365	계	328	계	328	계	328	계	330	
과학 기술 대학	바이오제약공학과	50	생명신소재융합학부		생명신소재융합학부		생명신소재융합학부		생명신소재융합학부	
			신소재화학전공	35	신소재화학전공	38	신소재화학전공	40	신소재화학전공	40
			의생명공학전공	36	의생명공학전공	38	의생명공학전공	40	의생명공학전공	40
			바이오제약공학전공	35	바이오제약공학전공	35	바이오제약공학전공	35	바이오제약공학전공	35
	창의융합공학부		창의융합공학부		창의융합공학부		창의융합공학부		창의융합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45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45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45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45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45
에너지전기공학전공	65	에너지전기공학전공	65	에너지전기공학전공	65	에너지공학전공	65	에너지전기공학전공	65	
기계시스템공학전공	40	기계시스템공학전공	48	기계시스템공학전공	48	기계시스템공학전공	48	기계시스템공학전공	45	
스마트안전공학부		안전공학전공	47	안전공학전공	47	안전공학전공	45	안전공학전공	45	
안전보건전공	40									
소방방재전공	20									
컴퓨터공학과	70	ICT-빅데이터학부		ICT-빅데이터학부		ICT-빅데이터학부		ICT-빅데이터학부		
		빅데이터융합전공	30	빅데이터융합전공	30	빅데이터융합전공	32	빅데이터융합전공	35	
		컴퓨터공학전공	65	컴퓨터공학전공	65	컴퓨터공학전공	65	컴퓨터공학전공	65	
조경정원디자인학부	40	조경학과	50	조경학과	50	조경학과	50	조경학과	50	
조경전공										
정원디자인전공										
계	370	계	456	계	461	계	465	계	465	
사회 대학	행정-경찰공공학부	100	행정-경찰공공학부	100	행정-경찰공공학부	100	행정-경찰공공학부	100	행정경찰공공학과	100
	공공행정학전공		공공행정학전공		공공행정학전공		공공행정학전공		공공행정학전공	
	경찰행정학전공		경찰행정학전공		경찰행정학전공		경찰행정학전공		경찰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과	55	사회복지학과	55	사회복지학과	55	사회복지학과	55	사회복지학과	55	
아동청소년교육학과	25									
계	180	계	155	계	155	계	155	계	155	
상경 대학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70	경영학전공	70	경영학전공	70	경영학전공	70	경영학전공	70
	회계세무학전공	40	회계세무학전공	40	회계학전공	40	회계학전공	40	회계학전공	40
	정보경영학전공	40	정보경영학전공	40	정보경영학전공	40	정보경영학전공	40	정보경영학전공	40
	항공서비스무역학과	60	글로벌경제통상학부	95	글로벌경제통상학부	95	글로벌경제통상학부	95	글로벌경제통상학부	95
	호텔관광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학전공	136	호텔관광경영학전공	136	호텔관광경영학전공	134	호텔관광경영학전공	134	호텔관광경영학부	130
조리외식경영학전공		조리외식경영학전공		조리외식경영학전공		조리외식경영학전공		조리외식경영학전공		

대학	2022학년도		2021학년도		2020학년도		2019학년도		2018학년도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학부 및 학과	입학 정원
	계	346	계	381	계	379	계	379	계	375
사범 교육 대학	유아교육과	30	유아교육과	30	유아교육과	30	유아교육과	30	유아교육과	30
	가정교육과	22	가정교육과	22	가정교육과	22	가정교육과	22	가정교육과	22
	수학교육과	28	수학교육과	40	수학교육과	40	수학교육과	40	수학교육과	40
	계	80	계	92	계	92	계	92	계	92
간호 대학	간호학과 보건의료정보학과 뷰티메디컬학과	85 30 30	간호학과	70						
	계	145	계	70						
한 의 과 대학	한의예과 한의학과	72 <72>	한의예과 한의학과	72 <72>	한의예과 한의학과	72 <72>	한의예과 한의학과	72 <72>	한의예과 한의학과	72 <72>
	계	72 <72>	계	72 <72>	계	72 <72>	계	72 <72>	계	72 <72>
의과 대학	의예과 의학과	49 <49>	의예과 의학과	49 <49>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49 <49> 70	의예과 간호학과	49 70	의예과 간호학과	49 70
	계	49 <49>	계	119 <49>	계	119 <49>	계	119	계	119
파 라 미 타 칼 리 지	자유전공학부	77	자유전공학부	34	자유전공학부	29	자유전공학부	26	자유전공학부	26
	계	77	계	34	계	29	계	26	계	26
경주 캠 퍼 스	합계	1,754 <121>	합계	1754 <121>	합계	1754 <121>	합계	1754 <72>	합계	1754 <72>

<별표2> 대학원별 학과편성과 입학정원 현황

◇ 일반대학원  
- 서울캠퍼스

과정	계열	학과	입학 정원			
석사 학위 과정	인문사회계 (29학과)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교육학과,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북한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지리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어교육학과, 역사교육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한문불전번역학과	505			
	자연과학계 (10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반도체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가정학과, 수학교육학과, 약학과				
	공학계 (16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화학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기술창업학과, 인공지능학과, 자율사물지능학과				
	예체능계 (4학과)	연극학과, 미술학과, 체육학과, 영화영상학과				
	의학계 (2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학과간 협동 과정 (14)	계열		과정명	학사관리대학 (기관)	참여학과 및 기관
		공학		의료기기산업학과	바이오시스템대학	의생명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경영학과, 약학과, 의학과
		공학		신재생에너지공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자연과학		한의생명과학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의학과, 바이오학부
		인문사회		국제다문화학과	문과대학	다르마칼리지, 국어국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법학과, 역사교육학과, 교육학과
		공학		재생의공학과	재생의공학융합연구원	의생명공학과, 식품공학과, 생명과학과, 의학과
		공학		융합표준학과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건축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경영정보학과, 약학과
		공학		핀테크블록체인학과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 경영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통계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예체능		스포츠포괄융합학과	예술대학	스포츠문화학과, 통계학과, 의학과, 글로벌무역학과, 광고홍보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의생명공학과
		공학		지식재산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법학과, 경찰행정학과, 융합보안학과, 경영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약학과
		인문사회		상담코칭학과	미래융합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육학과, 가정교육과
		공학		스마트혁신소재 부품공학과	공과대학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인문사회		부디스트비즈니스학과	불교학술원	불교학과, 한문불전번역학과, 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공학		VR-AR 테크놀로지학과	공과대학	멀티미디어공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 영상대학원 멀티미디어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산업시스템공학과		
자연과학	제약바이오산업학과	약학대학	약학과, 생명과학과, 의학과, 법학과, 컴퓨터공학과, 경영학과			
석사 계	5계열	61학과, 14학과간 협동과정	505			
박사 학위 과정	인문사회계 (29학과)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교육학과,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북한학과, 경제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지리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어교육학과, 역사교육학과, 한문불전번역학과	337			

자연과학계 (10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반도체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가정학과, 수학교육학과, 약학과																																																
공학계 (15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기술창업학과, 인공지능학과, 자율사물지능학과																																																
예체능계 (4학과)	연극학과, 미술학과, 체육학과, 영화영상학과																																																
의학계 (2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학과간 협동 과정 (11)	<table border="1"> <thead> <tr> <th>계열</th> <th>과정명</th> <th>학사관리대학 (기관)</th> <th>참여학과 및 기관</th> </tr> </thead> <tbody> <tr> <td>공학</td> <td>신재생에너지공학과</td> <td>공과대학</td> <td>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생태공학과</td> </tr> <tr> <td>인문 사회</td> <td>국제다문화학과</td> <td>문과대학</td> <td>다르마칼리지, 국어국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법학과, 역사교육학과, 교육학과</td> </tr> <tr> <td>공학</td> <td>재생의공학과</td> <td>재생의공학융합연구원</td> <td>의생명공학과, 식품공학과, 생명과학과, 의학과</td> </tr> <tr> <td>공학</td> <td>의료기기산업학과</td> <td>바이오시스템대학</td> <td>의생명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경영학과, 약학과, 의학과</td> </tr> <tr> <td>공학</td> <td>융합표준학과</td> <td>공과대학</td> <td>전자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건축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경영정보학과, 약학과</td> </tr> <tr> <td>공학</td> <td>핀테크블록 체인학과</td> <td>공과대학</td> <td>산업시스템공학과, 경영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통계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td> </tr> <tr> <td>예체능</td> <td>스포츠과학 융합학과</td> <td>예술대학</td> <td>스포츠문화학과, 통계학과, 의학과, 글로벌무역학과, 광고홍보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의생명공학과</td> </tr> <tr> <td>인문 사회</td> <td>상당코칭학과</td> <td>미래융합대학</td> <td>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육학과, 가정교육과</td> </tr> <tr> <td>예체능</td> <td>뷰티아트케어학과</td> <td>예술대학</td> <td>영상대학원 공연예술학과, 미술학부, 법학과, 화공생물공학과</td> </tr> <tr> <td>공학</td> <td>스마트혁신소재 부품공학과</td> <td>공과대학</td> <td>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td> </tr> <tr> <td>인문 사회</td> <td>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td> <td>불교학술원</td> <td>불교학과, 한문불전번역학과, 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td> </tr> </tbody> </table>	계열	과정명	학사관리대학 (기관)	참여학과 및 기관	공학	신재생에너지공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인문 사회	국제다문화학과	문과대학	다르마칼리지, 국어국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법학과, 역사교육학과, 교육학과	공학	재생의공학과	재생의공학융합연구원	의생명공학과, 식품공학과, 생명과학과, 의학과	공학	의료기기산업학과	바이오시스템대학	의생명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경영학과, 약학과, 의학과	공학	융합표준학과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건축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경영정보학과, 약학과	공학	핀테크블록 체인학과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 경영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통계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예체능	스포츠과학 융합학과	예술대학	스포츠문화학과, 통계학과, 의학과, 글로벌무역학과, 광고홍보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인문 사회	상당코칭학과	미래융합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육학과, 가정교육과	예체능	뷰티아트케어학과	예술대학	영상대학원 공연예술학과, 미술학부, 법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공학	스마트혁신소재 부품공학과	공과대학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인문 사회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불교학술원	불교학과, 한문불전번역학과, 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계열	과정명	학사관리대학 (기관)	참여학과 및 기관																																													
	공학	신재생에너지공학과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전자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인문 사회	국제다문화학과	문과대학	다르마칼리지, 국어국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법학과, 역사교육학과, 교육학과																																													
	공학	재생의공학과	재생의공학융합연구원	의생명공학과, 식품공학과, 생명과학과, 의학과																																													
	공학	의료기기산업학과	바이오시스템대학	의생명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경영학과, 약학과, 의학과																																													
	공학	융합표준학과	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건축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경영정보학과, 약학과																																													
	공학	핀테크블록 체인학과	공과대학	산업시스템공학과, 경영정보학과, 컴퓨터공학과, 통계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예체능	스포츠과학 융합학과	예술대학	스포츠문화학과, 통계학과, 의학과, 글로벌무역학과, 광고홍보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인문 사회	상당코칭학과	미래융합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육학과, 가정교육과																																													
	예체능	뷰티아트케어학과	예술대학	영상대학원 공연예술학과, 미술학부, 법학과, 화공생물공학과																																													
공학	스마트혁신소재 부품공학과	공과대학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인문 사회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불교학술원	불교학과, 한문불전번역학과, 경영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계	5계열	60학과, 11학과간 협동과정	337																																														
서울캠퍼스 총계			842																																														

- 경주캠퍼스

과정	계열	학과			입학 정원	
석사 학위 과정	인문사회계 (10학과)	불교학과, 국어국문학과, 한문학과, 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유아교육과			75	
	자연과학계 (7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생명과학과, 조경학과, 생명공학과, 가정학과, 간호학과				
	공학계 (4학과)	컴퓨터과학과, 안전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예체능계 (1학과)	미술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3)	계열	과정명	학사관리대학		관련학과
		인문사회	테크노경영	상경대학		정보경영학과, 경영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인문사회	국제비즈니스	상경대학		경제금융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학, 회계학, 정보경영학과
인문사회	아동·청소년 심리상담학과	불교문화대학	불교아동보육학과,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학·연·산 협동과정 (1)	한국원자력연구원					

석사계	4계열	22학과, 3학과간 협동과정, 1학·연·산 협동과정			75	
박사 학위 과정	인문사회계 (8학과)	불교학과, 국어국문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유아교육과			25	
	자연과학계 (5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조경학과, 가정학과, 간호학과				
	공학계 (4학과)	컴퓨터과학과, 안전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학과간 협동과정 (3)	계열	과정명	학사관리대학		관련학과
		인문사회	테크노경영	상경대학		정보경영학과, 경영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인문사회		국제비즈니스	상경대학	경제금융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학, 회계학, 정보경영학과		
인문사회	아동·청소년 심리상담학과	불교문화대학	불교아동보육학과, 사회복지학과, 간호학과			
학·연·산 협동과정 (1)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계	3계열	17학과, 3학과간 협동과정, 1학·연·산 협동과정			25	
경주캠퍼스 총계					100	

◇ 전문대학원

- 서울캠퍼스

구분	학과	전공	입학정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문화콘텐츠학과	콘텐츠기획, 콘텐츠 시나리오	80
		영화영상제작학과	기획/프로듀싱전공, 연출/시나리오전공, 영화영상제작전공, 콘텐츠비즈니스전공 (중문)	
		멀티미디어학과	XR테크놀로지전공, 콘텐츠디자인전공, 컴퓨터음악전공, 미디어아트전공	
		공연예술학과	연기연출전공, 예술경영전공	
	박사학위 과정	문화콘텐츠학과	콘텐츠기획, 콘텐츠 시나리오	20
		영화영상제작학과	기획/프로듀싱전공, 연출/시나리오전공, 영화영상제작전공	
		멀티미디어학과	XR테크놀로지전공, 콘텐츠디자인전공, 컴퓨터음악전공, 미디어아트전공	
계			100	
경영전문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Dongguk Global MBA	50	
		Dongguk MBA		
		비즈니스데이터애널리틱스 MBA		
		의료기기혁신경영 MBA		
	약학 MBA			
계			50	



- 경주캠퍼스

구분		과정	입학정원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의무석사과정	-
계			-

※ 교육학제 전환(의전원→의대)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중지

◇ 특수대학원

- 서울캠퍼스

구분	학과	전공	입학정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74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생사문화산업학과	생사문화산업전공	
		명상심리상담학과	명상심리상담전공	
		융합요기학과	융합요기학전공	
		차문화콘텐츠학과	차문화콘텐츠전공	
행정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지방자치전공, 감사행정전공	90
		안보·복합학과	외교·안보전공, 북한·통일전공, 방위사업전공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청소년전공	
		부동산학과	부동산전공	
		글로벌무역학과	글로벌무역전공, 국제통상전공(중문)	
교육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교육학과	교육행정·리더십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HRD·성과코칭전공, 다문화융합교육전공, 스포츠지도전공, 한국어교육전공, AI융합교육전공	109
		교과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무용교육전공, 조리교육전공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디지털컨텐츠전공	30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전공	
		인쇄출판학과	출판잡지전공, 인쇄화상전공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문예창작학과	시전공, 소설·드라마전공	130
		연극예술학과	연극예술전공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전공, 문화재전공, 한국음악전공, 민화전공	
		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전공, 미술경영전공, 문화예술산업관리전공(중문)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실용예술학과	실용음악전공, 뷰티아트케어전공, 글로벌음악산업전공	
국제정보보호	석사학위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블록체인전공, 인공지능보안전공	70

구분		학과	전공	입학 정원
대학원	과정	사이버포렌식학과	사이버포렌식전공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법학과	법률실무전공, 자산관리법무전공, 손해사정법무전공, 정보·기술법무전공, 문화·뷰티산업법무전공, 지식재산법무전공, 탐정(PIA)법무전공, 행정법무전공	50
경찰사법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경찰사법학과	경찰학전공, 산업보안학전공, 과학치안학전공	70
		범죄심리학과	범죄심리학전공	
		과학수사학과	과학수사학전공	
		비상안전학과	비상안전학전공	
교육서비스 과학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미래학습과학과	교육데이터사이언스전공, 학습디자인-에듀테크전공	30
		교육서비스융합학과	인간발달-재활전공, 시니어교육서비스전공	
미래융합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융합상담코칭학과	융합상담코칭전공	40
계				693

- 경주캠퍼스

구분		학과	전공	입학 정원
불교문화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50
		불교예술학과	국악전공, 불교미술전공, 선화·민화전공	
		생사문화학과	생사문화학전공	
		불교풍수문화학과	불교풍수문화학전공	
		불교상담학과	불교상담학전공	
		다도학과	다도학전공	
사회과학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행정학과	정책개발전공, 지방자치전공	40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전공, 정치학전공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스포츠과학과	스포츠과학전공	
		부동산학과	부동산전공	
		사회심리상담학과	상담심리학전공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25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전공	
계				115

<별표3> 학사과정 학위명

- 서울캠퍼스

대학	학부(과)	수여학위
불교대학	불교학부 문화재학과	문학사 문화재학사
문과대학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국어국문학전공 문예창작학전공 영어영문학부 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학전공 일본학과 중어중문학과 철학과 사학과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이과대학	수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물리·반도체과학부 물리학전공 반도체과학전공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이학사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사회과학대학	정치행정학부 정치외교학전공 행정학전공 북한학전공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사회·언론정보학부 사회학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식품산업관리학과 광고홍보학과 사회복지학과	정치학사 행정학사 북한학사 경제학사 국제통상학사 문학사 언론학사 경제학사 광고홍보학사 사회복지학사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경찰학전공 산업보안전공 범죄과학전공 교정학전공	경찰학사 범죄학사 범죄학사 범죄학사
경영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사 경영학사 경영학사
바이오시스템대학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의생명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이학사 이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과대학	건축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건설환경공학과 항공생물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공학사 이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대학	학부(과)	수여학위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수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체육교육과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이학사 가정학사 체육학사
예술대학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연극학부 연극전공 뮤지컬전공 영화영상학과 스포츠문화학과	미술학사 미술학사 미술학사 미술학사 연극학사 연극학사 뮤지컬학사 영화학사 체육학사
약학대학	약학과	약학사
미래융합대학	융합보안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	융합보안학사 사회복지학사 무역학사

- 경주캠퍼스

대 학	학 부(과)	수 여 학 위
불교문화대학	불교학부 불교학전공 불교문화콘텐츠전공 명상심리상담학과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인문대학	웹문예학과 인문콘텐츠학부 국사학전공 고고미술사학전공 글로벌어문학부 영어영문학전공 일어일문학전공 중어중문학전공 디자인미술학과 스포츠건강과학부 스포츠과학전공 스포츠의학전공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디자인미술학사 체육학사 체육학사
과학기술대학	바이오제약공학과 창의융합공학부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에너지·전기공학전공 기계시스템공학전공 스마트안전공학부 안전보건전공 소방방재전공 컴퓨터공학과 조경·정원디자인학부 조경전공 정원디자인전공	이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공학사 조경학사 조경학사
사회대학	행정·경찰공공학부 공공행정학전공 경찰행정학전공 사회복지학과 아동청소년교육학과	행정학사 경찰학사 문학사 문학사
상경대학	경영학부	

대 학	학 부(과)	수 여 학 위
	경영학전공 회계세무학전공 정보경영학전공 항공서비스무역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학전공 조리외식경영학전공	경영학사 경영학사 경영학사 경영학사 관광경영학사 관광경영학사
사범교육대학	유아교육과 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	교육학사 가정학사 이학사
간호대학	간호학과 보건의료정보학과 뷰티메디컬학과	간호학사 보건학사 보건학사
한외과대학	한의학과	한의학사
외과대학	의학과	의학사

- 연계전공

구분	연계전공	수여학위
서울캠퍼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학사
	디자인공학	공학사
	커뮤니케이션관리과정	커뮤니케이션학사
	문화기획과정	문화기획학사
	문화학과	문화학사
	문화공학과	문화공학사
	소비자학	소비자학사
	공통사회	
	공통과학	
	TESOL	문학사
	경제, 사회, 범죄학	범죄학사
	국제교류협력	문학사
	다문화사회	문학사
	식품영양학	이학사
	창업학	창업학사
	융합소프트웨어	융합소프트웨어학사
	융합지식재산	융합지식재산학사
	불교생사철학	불교생사철학사
	예술융합	예술융합학사
	과학수사	과학수사학사
	건설정보소프트웨어	건설정보융합소프트웨어학사
	로봇융합소프트웨어	로봇융합소프트웨어학사
	문화예술소프트웨어	문화예술융합소프트웨어학사
	범죄수사소프트웨어	범죄수사학사
	산업정보소프트웨어	산업정보융합소프트웨어학사
	생명정보소프트웨어	생명정보융합소프트웨어학사
	입법코디네이터	입법코디네이터학사
	서베이리서치	서베이리서치학사
	창의적사회디자인	창의적사회디자인학사
	SI영어교육	문학사
	데이터사이언스소프트웨어	데이터사이언스소프트웨어학사
그래픽커뮤니케이션사이언스	그래픽커뮤니케이션사이언스학사	
e-비즈니스	경영학사	
경주캠퍼스	정보처리	공학사
	웹설계및응용전공	공학사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공학사
	실감미디어공학전공	공학사
	글로벌서비스비즈니스전공	경영학사
	스마트관광전공	관광경영학사

구분	연계전공	수여학위
	정보미디어경영전공	경영학사
	문화콘텐츠기획전공	문화콘텐츠학사
	국제비서학전공	국제비서학사

- 융합전공

구분	융합전공	수여학위
서울캠퍼스	공공인재	공공인재융합학사
	인텔리전스로봇	인텔리전스로봇융합공학사
경주캠퍼스	재난대응서비스	재난대응서비스융합학사

<별표4> 대학원과정 학위명

◇ 일반대학원

- 서울캠퍼스

계열	학	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인문사회계	불교학과		문학석사	철학박사
	선학과		문학석사	철학박사
	인도철학과		문학석사	철학박사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일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중어중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사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미술사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철학과		문학석사	철학박사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국어교육학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역사교육학과		역사교육학석사	역사교육학박사
	법학과		법학석사	법학박사
	정치학과		정치학석사	정치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경찰학석사	경찰학박사
	경찰행정학과		범죄학석사	범죄학박사
			법심리학석사	법심리학박사
	사회학과		사회학석사	사회학박사
	북한학과		북한학석사	북한학박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언론학석사	언론학박사
	경제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국제통상학과 (국제경영·비교문화전공)		무역학석사	무역학박사
	(무역실무·운송전공)			
	(국제통상·지역연구전공)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무역이론·금융전공)				
회계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경영정보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박사	
식품산업관리학과		경제학석사	경제학박사	
지리학과		지리학석사	지리학박사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학석사	광고홍보학박사	
한문불전번역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자연과학계	수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물리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화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반도체과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계열	학 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수학교육학과 바이오환경과학과 생명과학과 가정학과 약학과	교육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 가정학석사 약학석사	교육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 약학박사
공학계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설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멀티미디어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의생명공학과 융합에너지신소재공학과 기술창업학과 스마트안전공학과 인공지능학과 자율사물지능학과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건축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의생명공학석사 공학석사 기술창업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의생명공학박사 공학박사 기술창업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예체능계	연극학과 미술학과 체육학과 영화영상학과	연극학석사 미술학석사 체육학석사 영화학석사	연극학박사 미술학박사 체육학박사 영화학박사
의학계	한의학과 의학과	한의학석사 의학석사	한의학박사 의학박사

- 경주캠퍼스

계열	학 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인문사회계	불교학과	문학석사	철학박사
	국어국문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한문학과	문학석사	-
	사학과	문학석사	-
	고고미술사학과	문학석사	문학박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석사	사회복지학박사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행정학박사
	경영학과	-	경영학박사
	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석사	호텔관광경영학박사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교육학박사	
자연과학계	화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통계학과	이학석사	-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이학박사
	조경학과	조경학석사	조경학박사
	생명공학과	이학석사	-
	가정학과	가정학석사	이학박사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간호학박사	
공학계	컴퓨터과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안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정보통신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공학석사	공학박사
예체능계	미술학과	미술학석사	-

◇ 전문대학원  
- 서울캠퍼스

과 정	학과	전공(세부분야)	학위명
영상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문화콘텐츠학과	콘텐츠기획전공	문화예술학석사(콘텐츠기획)
		콘텐츠시나리오전공	문학석사(콘텐츠시나리오)
	영화영상제작학과	기획/프로듀싱전공	영화영상제작석사(기획/프로듀싱)
		연출/시나리오전공	영화영상제작석사(연출/시나리오)
		영화영상제작전공	영화영상제작석사
		콘텐츠비즈니스전공(중문)	영화영상제작석사(콘텐츠비즈니스)
	멀티미디어학과	XR테크놀로지전공	공학석사(XR테크놀로지)
		콘텐츠디자인전공	디자인학석사(콘텐츠디자인)
		컴퓨터음악전공	음악석사(컴퓨터음악)
		미디어아트전공	융합예술석사(미디어아트)
공연예술학과	연기연출전공	공연예술전문석사(연기연출)	
	예술경영전공	공연예술전문석사(예술경영)	
영상대학원 박사학위과정	문화콘텐츠학과	콘텐츠기획전공	문화예술학박사(콘텐츠기획)
		콘텐츠시나리오전공	문학박사(콘텐츠시나리오)
	영화영상제작학과	기획/프로듀싱전공	영화영상제작박사(기획/프로듀싱)
		연출/시나리오전공	영화영상제작박사(연출/시나리오)
		영화영상제작전공	영화영상제작박사
	멀티미디어학과	XR테크놀로지전공	공학박사(XR테크놀로지)
		콘텐츠디자인전공	디자인학박사(콘텐츠디자인)
		컴퓨터음악전공	음악박사(컴퓨터음악 및 작곡)
		미디어아트전공	융합예술박사(미디어아트)
과 정		학위명	
경영전문대학원 석 사학위과정	Dongguk Global MBA	경영학석사(Global MBA)	
	Dongguk MBA	경영학석사(Dongguk MBA - HR/Leadership)	
		경영학석사(Dongguk MBA - Operations)	
		경영학석사(Dongguk MBA - Marketing)	
		경영학석사(Dongguk MBA - Finance)	
		경영학석사(Dongguk MBA - Accounting)	
		경영학석사(Dongguk MBA - MIS)	
경영학석사(Dongguk MBA - Entrepreneurship)			
경영학석사(Dongguk MBA - Pharmacy)			
비즈니스데이터애널리틱스 MBA		경영학석사(비즈니스데이터애널리틱스 MBA)	
의료기기혁신경영 MBA		경영학석사(의료기기혁신경영 MBA)	
약학 MBA		경영학석사(약학 MBA)	



- 경주캠퍼스

과 정		학위명
의학전문대학원	의무석사과정, 학·석사통합과정	의무석사
석사학위과정	학·석사통합과정*	이학사

\*제52조 제2항 제3호 라목의 경우에 수여하는 학위

◇ 특수대학원  
- 서울캠퍼스

구 분	학과	세부전공	학위명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문학석사(불교)
	불교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생사문화산업학과	생사문화산업전공	문학석사(생사문화산업)
	명상심리상담학과	명상심리상담전공	문학석사(명상심리상담)
	융합요가학과	융합요가학전공	문학석사(융합요가)
	차문화콘텐츠학과	차문화콘텐츠전공	문학석사(차문화콘텐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정책학전공, 지방자치전공, 감사행정전공	행정학석사(행정, 정책, 지방자치, 감사행정)
	안보·북한학과	외교·안보전공, 북한·통일전공, 방위사업전공	행정학석사(외교·안보, 북한·통일, 방위사업)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청소년전공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청소년)
	부동산학과	부동산전공	부동산학석사(부동산)
	글로벌무역학과	글로벌무역전공, 국제통상전공(중문)	글로벌무역학석사(글로벌무역, 국제통상)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행정·리더십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HRD·성과코칭전공, 다문화융합교육전공, 스포츠지도전공, 한국어교육전공, AI융합교육전공	교육학석사(교육행정 리더십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HRD·성과코칭전공, 다문화융합교육전공, 스포츠지도전공, 한국어교육전공, AI융합교육전공)
	교과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무용교육전공, 조리교육전공	교육학석사(역사교육전공, 지리교육전공, 국어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중국어교육전공, 수학교육전공, 가정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생물교육전공, 미술교육전공, 체육교육전공, 무용교육전공, 조리교육전공)
언론정보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신문방송전공, 디지털컨텐츠전공	언론학석사(신문방송) 언론학석사(디지털컨텐츠)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전공	광고홍보학석사(광고홍보)
	출판편집학과	출판편집전공, 인쇄화상전공	문학석사(출판편집) 공학석사(인쇄화상)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시전공, 소설·드라마전공	문학석사(시전공) 문학석사(소설·드라마전공)
	연극예술학과	연극예술전공	예술학석사(연극예술)
	불교예술문화학과	불교미술전공	예술학석사(불교미술)
		문화재전공	예술학석사(문화재)
		한국음악전공	음악학석사(한국음악)
	예술경영학과	민화전공	예술학석사(민화)
		공연예술경영전공	예술경영학석사(공연예술경영)
		미술경영전공	예술경영학석사(미술경영)
		문화예술산업관리전공(중문)	문화예술산업관리석사
	예술치료학과	미술치료전공	예술치료학석사(미술치료)
실용예술학과	실용음악전공	실용음악학 석사	
	뷰티아트케어전공	항장학석사(뷰티아트케어)	
	글로벌음악산업전공	글로벌음악산업석사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정보보호학과	정보보호전공, 블록체인전공, 인공지능보안전공	정보보호학석사 정보보호학석사(블록체인) 정보보호학석사(인공지능보안전공)
	사이버포렌식학과	사이버포렌식전공	사이버포렌식학석사
	법학과	법률실무전공, 자산관리법무전공, 손해사정법무전공, 정보·기술법무전공	법학석사 법학석사 법학석사 법학석사

구 분	학과	세부전공	학위명
		문화·비디산업법무전공 지식재산권법전공 탐정(P/A)법무전공 행정법무전공	법학석사 법학석사 법학석사 법학석사
경찰사법대학원	경찰사법학과	경찰학전공	경찰학석사
		산업보안학전공	산업보안학석사
		과학지안학전공	경찰학석사
	범죄심리학과	범죄심리학전공	범죄학석사
	과학수사학과	과학수사학전공	범죄학석사
	비상안전학과	비상안전학전공	비상안전학석사
교육서비스 과학대학원	미래학습과학과	교육데이터사이언스전공	교육학석사(교육데이터사이언스전공)
		학습디자인·에듀테크전공	교육학석사(학습디자인·에듀테크전공)
	교육서비스융합학과	인간발달·재활전공 시니어교육서비스전공	교육학석사(인간발달·재활전공) 교육학석사(시니어교육서비스전공)

- 경주캠퍼스

구 분	학과	세부전공	학위명
불교문화대학원	불교학과	불교학전공 선학전공	문학석사(불교학) 문학석사(선학)
	불교예술학과	국악전공 불교미술전공 선화·민화전공	음악학석사(국악) 미술학석사(불교미술) 미술학석사(선화·민화)
	생사문화학과	생사문화전공	문학석사(생사문화)
	불교풍수문화학과	불교풍수문화전공	문학석사(불교풍수문화)
	불교상담학과	불교상담전공	문학석사(불교상담)
	다도학과	다도학전공	다도학석사(다도학)
사회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정책개발전공, 지방자치전공	행정학석사(정책개발, 지방자치)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전공, 정치학전공	정치학석사(국제관계, 정치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석사(사회복지)
	스포츠과학과	스포츠과학전공	체육학석사(스포츠과학)
	부동산학과	부동산전공	부동산학석사(부동산)
	사회심리상담학과	상담심리학전공	상담심리학석사(상담심리)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경영학석사(경영)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전공	경영학석사(경영)



## 제 1 장 입 학편입학 및 재입학 포함

**제1조(입학)** ① 본교에 입학(편입학과 재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의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나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성적증명서(내신성적 포함)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② 입학의 지원은 보증인 연서로 하여야 한다. 보증인은 학부형이라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 중 학비나 기타 신분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할 수 있다.
- ③ 제출된 서류와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3학년 모집단위에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여석의 산출기준은 따로 정한다.

- ② 편입학은 편입학시험을 거쳐 허가한다.
- ③ 편입학한 학생은 해당 학과(전공과 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학과(전공)으로 한다)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 ④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편입학년의 직전학기 수료학점까지 인정한다.(2006.12.18. 2008.11.14. 개정)
- ⑤ 편입학한 학생이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교의 전공과목 및 대학지정과목에 한하여 소속학과(전공)의 심사를 통하여 최대 1학기 수료학점 이내(졸업학점이 120학점인 대학은 15학점 이내, 130학점인 대학은 16학점 이내, 140학점인 대학은 17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 단, 공과대학, 경주캠퍼스 이공계열로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한 전공과목 및 대학지정과목 인정은 따로 정한다.(2008.11.14. 2009.1.5, 2009.4.15, 2011.12.20 개정)

**제3조(학사편입학)** ① 학사편입학은 3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5% 이내, 해당 학과(전공)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입학정원 외로 3학년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입학시험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필기시험을 과할 수도 있다. 다만, 예체능계 지원자에게는 실기시험을 부과한다.
- ③ 학사편입(위탁생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자는 재학기간 2년(4학기)동안에 편입학한 학과(전공)의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의 1/2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한의학과 및 의학과는 해당 교육과정 이수기준에 의한다.
- ④ 본교를 졸업한 자가 학사편입 할 때에는 입학금을 면제한다.

**제4조(재입학)** ① 재입학은 직전학년도 또는 학기의 모집단위에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여석의 산출기준은 따로 정한다.

- ② 재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소정의 재입학원서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2020.3.18. 개정)
- ③ 재입학은 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입학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총장이 최종 승인한다.
- ④ 재입학심사위원회는 재입학대상자의 재학 중 학년, 취득학점 및 성적, 품행 및 학칙준수여부, 학업이수능력 및 열의 등을 종합 심사하며, 심사평점이 우수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을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입학전 교육)** ①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제외)이 확정된 자는 본교에서 시행하는 입학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입학전 교육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한 자가 본교에 입학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F학점은 제외한다.

## 제 2 장 교육과정

**제6조(구성)**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자유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2021.3.23. 개정)

② 미래수요를 반영한 최신의 특성화 학문 분야 개발을 통해 별도의 모듈형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이수요건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2021.3.23. 신설)

**제7조(교양과목)** 각 학과(전공) 및 학년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양과목과 이수요건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공과목)** ① 전공과목은 1,2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기초교육과목과 3,4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전문교육과목으로 구분된다.

② 필수과목은 지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과목을 지정하거나 여러 과목 중에서 선택적으로 필수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학생은 전공과정(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을 포함한다)을 이수함에 있어 3, 4학년의 전문교육과목에 개설된 과목을 전공최저이수학점의 1/2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020.1.13. 개정)

④ 학문성격이 비슷하여 관련학과(전공)로 지정된 경우에는 전공과목을 학과(전공)구분 없이 이수할 수 있다.

⑤ 학문성격이 유사하여 유사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개설학과(전공)가 다르더라도 상호 호환을 인정할 수 있다.

⑥ 전공교육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공인정과목으로 지정된 타 학과(전공)의 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를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⑦ 동일 학부 내에서 공통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면, 학부내의 어느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으로나 인정할 수 있다. (2013.2.22 개정)

⑧ 경주캠퍼스의 동일 학부(계열) 내에서 기

초공통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학부(계열)별 최저이수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⑨ 각 학과(전공) 및 학년별로 이수해야 하는 전공과목과 이수요건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⑩ (공학교육인증제)

1. 학칙제32조5항에 의거 공과대학 및 정보산업대학 소속 학과(부), 과학기술대학 정보통신공학부의 교육과정은 일반과 정과 공학교육 인증을 위한 인증제교육과정(이하 「심화과정」으로 칭한다)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2009.1.5, 2011.3.2. 개정)

2. 일반과정과 심화과정 이수 기준에 따른 졸업생의 구분은 별표 1·2와 같이 졸업 및 성적증명서에 표기한다. (2009.12.2. 2011.3.2, 2011.8.10, 2012.4.2. 개정)

⑪ 출석수업이 어려운 경우 원격수업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공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014.12.31. 신설)

⑫ 2020학년도 2학기 이후 서울캠퍼스 학사과정 외국인전형 신입학생은 별도로 정한 기준 충족 시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서울캠퍼스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관리 내규에 따른다.(2020.7.2. 신설)

**제9조(필수과목)** 교양 및 전공과목 등에 필수로 지정된 과목은 빠짐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필수과목을 1과목이라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졸업할 수 없다. 다만, 승적증명서를 제출한 승려의 경우에는 자아와 명상 1, 2에 대하여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 제 3 장 사회봉사 및 현장실습

**제10조(사회봉사)** ①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사회봉사 교과목을 신청하여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학기당 이수기준학점을 초과하여 2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2010.9.8 개정)

② 학점은 33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하며, 성적은 P(Pass) 또는 F(Fail)로 표기한다. (2010.9.8 개정)

③ 사회봉사의 과목명, 학기, 이수기준과 시간 인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캠퍼스별로 따로 정한다. (2010.9.8., 2010.10.05.,

2020.3.18. 개정)

**제11조(서울캠퍼스 현장실습교과목 및 창업대체 학점 인정제)**

① 현장실습교과목과 창업대체 학점 인정제(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합산하여 최대 18학점으로 제한하고, 이 중 전공(전문교육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복수전공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2019.4.30. 개정)

② 해당 과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

제11조의2(경주캠퍼스 현장실습) ① 현장실습 참여학기를 기준으로 모든 재학생은 국내외 기업체·연구소·관공서 등에서 현장실습(Internship)을 이수하여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08.4.8. 2010.9.8., 2017.1.2., 2020.1.13. 개정)

②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 운영방법 등 현장실습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010.9.8. 2011.5.18., 2020.1.13. 개정)

- ③ <2020.1.13. 삭제>
- ④ <2020.1.13. 삭제>
- ⑤ <2020.1.13. 삭제>
- ⑥ <2020.1.13. 삭제>
- ⑦ <2020.1.13. 삭제>

[제11조에서 이동 2018.1.2.]

**제12조** <2020.1.13. 삭제(경주캠퍼스 현장실습의 학점인정)>

**제13조** <2013.2.22 삭제>

## 제 4 장 수강신청

**제14조(신청시기)**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수강신청 기간과 방법은 교무학생처장(경주캠퍼스는 교무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2019.8.21. 개정)

**제15조(신청과 이수학점)**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최소 12학점(4학년은 최저이수학점 3학점) 이상, 최대 18학점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대학은 최대 21학점까지, 졸업학점이 160학점 이상인 학과는 최대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2021.9.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기당 최대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3호는 상호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1.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졸업학점이 140학점인 대학은 18학점 이상, 160학점인 대학은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이상인 자는 3학점
  2. 학·석사연계과정,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3학점(2020.8.23. 개정)
  3. 교직복수전공을 이수중이거나 공학교육인증학과를 포함하여 복수전공하는 자는 3학점
  4. 사회봉사활동에 의한 학점은 1학점
  5. 어학연수에 의한 학점은 3학점
  6. 계절학기 수업에 의한 학점은 6학점
  7.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은 6학점
  8. 군사학 강좌를 수강하는 학군사관후보생은 2학점(경주캠퍼스는 3학점)(2021.4.12. 개정)
- ③ 장학생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5학점 이상(7학기 이상인 자는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취득해야 한다.

**제16조(폐강기준인원)** 수강신청학생이 교양과목은 19명 이하, 전공과목은 9명(입학정원이 30명이하인 경우 5명)이하인 경우 폐강시킬 수 있다. 다만, 필수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수강인원의 제한)**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수업여건을 고려하여 교무학생처장(경주캠퍼스는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2019.8.21. 개정)

**제18조(수강신청의 변경)** ① 수강신청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학생처장(경주캠퍼스는 교무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2006.12.18., 2019.8.21. 개정)

② <2006.12.18. 삭제>

**제19조(수강과목의 취소)** ① 매학기 수업개시일로부터 5주 이내 정해진 기간에 수강과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과목을 추가로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취소 후 최종 수강신청학점이 최소 12학점(4학년은 3학점) 이상이어야 한다.(2006.12.18. 2010.9.8. 개정)

② 과목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취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대상과목은 교무학생처장(경주캠퍼스는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2019.8.21. 개정)

③ <2010.9.8 삭제>

④ 수강을 취소한 과목은 성적표에 W로 표기한다

다.

**제20조(재수강)** ① 성적이 C+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시 취득가능 최고 성적은 A0로 한다. 단, 경주캠퍼스는 재수강시 취득가능 최고 성적은 B+로 하며, 동일 교과목의 재수강을 최대 1회로 제한하되 F학점을 취득한 경우는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2012.01.11., 2013.12.30. 2016.2.22., 2020.8.23. 개정)

② 재수강은 과목명과 교과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허가한다. 다만,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대체과목을 지정하여 취득한 성적을 재수강으로 인정할 수 있다.(2012.01.11, 2014.8.18. 개정)

③ 재수강이전에 취득한 성적은 R로 표기하고 취득학점 및 평점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재수강으로 취득한 성적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성적에 따른 조치를 소급하여 변경할 수 없다.

⑤ 교과목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재수강을 제한할 수 있으며, 대상과목은 따로 정한다.(2014.4.28 신설)

**제20조의2** <2016.2.22. 삭제(경주캠퍼스 취득 교과목의 포기)>

**제20조의3(서울캠퍼스 취득교과목의 포기)** ① 서울캠퍼스 소속 학생은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과목의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 5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6학점까지 포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2.]

## 제 5 장 대학원 과정과의 연계

**제21조(대학원 과정과의 연계)** ① 대학원 학칙 등에서 정한 학·석사연계과정과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신청서를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학원 과정과의 연계과정 이수자로 선정된 학생은 대학원 과목을 매 학기 6학점, 총 12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추고 평점평균이 3.5이상인 경우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을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③ 이 과정을 이수중인 자는 학사과정을 졸업한 후 반드시 해당 대학원에 진학하여야 한다. 다만, 학사과정 졸업 시 졸업논문은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기타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0.8.23.]

**제22조(석사과정 과목 수강)** ① 5학기 이상 등록하고 총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는 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석사과정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 과목은 학기당 최대 6학점, 재학 중 총 9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다만, 수강신청은 매 학기당 최대수강신청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2016.2.22. 개정)

③ 제1항 및 2항에 의해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졸업소요학점으로 산정하고, 석사과정 진학시 석사과정 학점으로도 산정한다. 다만, 석사과정 학점으로의 인정은 학사과정 졸업최저학점 초과분에 한한다.

④ 이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소정기간 내에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소속 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2020.3.18. 개정)

⑤ 제21조와 제22조에 의해 이수한 석사과정 과목의 성적은 학사과정의 장학생 선발, 학기 및 졸업우등생 선정, 졸업성적 환산 등 모든 평점 환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 제 6 장 타 대학 등과의 교류

**제23조(신청자격과 허가)** ① 학생은 재학 중 국내 외의 공인된 4년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다.(2017.1.2. 개정)

② 타 대학 등과의 교류는 신청시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서 총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에 한하여 승인한다. 다만, 계절학기를 이용한 단기간 국외유학자는 예외를 인정한다.(2017.1.2., 2020.8.23., 2021.9.29. 개정)

③ 캠퍼스 간 학점교류는 1학기 이상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학과(전공)별 입학정원(또는 기준정원)의 10%이내에서 허가한다.(2007.12.11., 2021.9.29. 개정)

④ 교류인정대상은 본교 각 캠퍼스, 본교와 교류

협정을 체결한 대학 및 총장이 따로 정하는 대학의 교육과정과 어학연수과정으로 한다.

**제24조(신청과 선발)** ① 교류를 원하는 자는 학부(과)장의 승인을 받은 신청서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국내교류), 또는 국제처(국외교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3.7.8., 2020.3.18. 개정)

② 타 대학 등과의 교류 신청 및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류대학과 협의하여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5조(이수)** ① 학생은 교류기간 중 해당학기 등록금을 본교에 납입하고 교류대학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대학 교류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수강신청은 생략한다.

②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졸업해당학기를 본교에서 이수해야 한다.

**제26조(학점과 성적인정)** ①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속학과 졸업학점(편입생은 편입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의 4분의 1범위 안에서 이를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협정에 의한 경우에는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2분의 1범위까지, 경주캠퍼스 편입생은 소속학과 졸업학점의 4분의 1범위까지 인정할 수 있다.(2017.1.2., 2018.7.6. 개정)

② 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은 정규학기는 학기당 18학점 이내, 계절학기는 6학점 이내로 인정할 수 있다.(2017.1.2. 개정)

③ 타 대학 등에서 이수한 과목의 명칭과 학점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 및 동일계열전공에서 이수한 과목일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학부(과)장이 정한다.

④ 성적표기는 국내교류일 경우 원래 성적을 본교 기준에 따라 환산 적용하고, 국외교류일 경우에는 P 또는 F로 표기하며, 성적기록표에 「00대학 이수」로 표기한다.

⑤ 타 대학 등에서 이수한 성적은 국내교류의 경우 교무학생처(경주캠퍼스는 교무처), 국외교류의 경우 국제처(경주캠퍼스는 국제교류처)로 해당 대학에서 성적증빙자료를 직접 송부한 것, 또는 밀봉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2013.7.8., 2019.8.21. 개정)

⑥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본교 캠퍼스 간 교류 제외)에 의해 취득한 성적은 장학사정 개시일 3일 전까지 교무학생처(경주캠퍼스는 교무처)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학기 장학생

선발의 성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2006.12.18. 신설, 2009.1.5. 2010.9.8., 2019.8.21. 개정)

**제27조(어학연수)** ① 학생이 방학 또는 휴학기간 중 해외 대학에서 이수한 어학연수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통산 3학점 이내에서 교양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어학연수에서 취득한 학점은 연수기관, 연수내용 및 연수기간 등을 명시한 소정의 양식에 의거 국제교육원에 신청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③ 이 학점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은 P 또는 F로 표기하여 전체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④ 학점은 연수기간 종료 후 또는 귀국 후 4주 이내에 연수활동과 관련한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해 어학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부여한다.

**제27조의2(교내 집중영어연수)** ① 학생이 방학 또는 휴학기간 중 국제어학원 집중영어연수를 이수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통산 3학점 이내에서 교양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2014.1.23 개정)

② 집중영어연수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양식에 의거 교양외국어센터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다.(2014.1.23 개정)

③ 이 학점은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은 P 또는 F로 표기하여 전체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본조신설 2008.4.8.]

**제27조의3(군 교육훈련)** ①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군 교육훈련 평가 인정 기관에서 특기병 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학점은 휴학중 계절학기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성적은 P 또는 F로 표기하여 전체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③ 학점은 군 복학 후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를 구비 후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다.(2020.3.18. 개정)

[본조신설 2010.10.25]

**제27조의4(군 복무 중 원격수업)** ①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2017.4.3. 개정)

② 원격수업은 본 대학교 소속 캠퍼스에서 개설

한 수업만 인정되며, 제27조의3(군 교육훈련)의 인정 학점을 포함하여 통산 6학점 이내에서 휴학 중 계절학기 취득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전체 졸업학점에 가산한다.(2017.4.3. 개정)

- ③ 학점은 군 복학 후, 소정의 양식에 의거 서울 캠퍼스는 다르마칼리지 학사운영실, 경주캠퍼스는 파라미타칼리지 학사운영실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2014.1.23., 2017.4.3., 2020.3.18. 개정)
- ④ 수강 및 성적부여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

- 제27조의5(미래융합대학 학습경험인정 등)** ① 미래융합대학 학생이 소속 학과 교육과정 관련 근무경력이 있을 시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6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미래융합대학 학생이 재학기간 중 K-MOOC 이수 시 수강신청 학점 범위 내에서 학기당 1학점 최대 6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23.]

## 제 7 장 계절학기

**제28조(계절학기)** ① 계절학기 수업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에 각각 개설할 수 있다.

- ② 수업기간은 5주 내외로 하고, 학점당 수업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29조(이수자격)**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있는 자는 본교 재학생(휴학생을 포함한다)과 본교 학술교류협정 체결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서 소속대학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30조(이수와 학점인정)** ① 당해연도 제1학기, 제2학기, 계절학기 개설과목 중에서 15명 이상 수강신청 및 등록한 과목을 개설한다.(2018.1.2., 2021.1.15. 개정)

- ② 매 계절학기마다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현장 실습 및 International summer school을 포함하여 6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4학점 과목에 한하여 재학생은 2과목(최대8학점), 휴학생은 1과목(4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2008.4.8 신설)

- ④ 계절학기 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해당학기 학점으로 인정한다.(2006.12.18 개정)

- ⑤ 휴학 중 취득한 학점으로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복학 후 등록하여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2006.12.18. 2008.4.8 개정)

**제31조(수업료)** ① 수업료는 학점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학점이 없는 과목은 시간단위로 책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경비를 수강생에게 부과할 수 있다.

- ② 계절학기 개시일로부터 1/2되는 시점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아래표와 같이 접수료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2008.4.8. 2009.11.6 개정)

취소일시	환불내역
계절학기 개강 개시 전	전 액
수업개시일 ~ 수업1/4경과 전	환불(수강료의 5/6)
수업1/4 ~ 수업1/2경과 전	환불(수강료의 2/3)
수업1/2 ~ 종강	환불불가

## 제 8 장 시험

**제32조** <2016.10.31. 삭제(원칙)>

**제33조(시험)** 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기말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에 따라 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형태의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2016.10.31. 개정)

**제34조** <2016.10.31. 삭제(추가시험)>

**제35조(개별시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과목 담당교수에게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개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병역의무에 따른 군복무, 임신·출산 및 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한 자 중 학기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였으나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2018.1.2. 개정)
  2. 제48조의 유고결석 대상자
  3. 8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또는 7학기)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② 개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별도의 과제물로 시험을 대체하여 개별시험 성적평가를 할 수 있다.



- ③ 개별시험(과제물 대체 평가 포함)에 대한 최고 성적은 100점 만점에 90점 미만으로 제한한다.

[전문개정 2016.10.31.]

**제36조(특별시험)** ① 학교가 정한 일부과목에 한해 이를 이수하지 아니하고 따로 과하는 특별 시험에 의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② 이 시험에 합격된 과목의 성적은 A+, A°로 평가하며, 통산하여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제37조(응시)** 학생은 시험일정표에 따라 응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학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시험은 그 사유가 발생한 학기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2016.10.31. 개정)

**제38조(부정행위자)** 부정행위자는 퇴실당하며 그 시험은 무효로 한다.

## 제 9 장 성적

**제39조(성적산출)** ① 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평가성적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다.

- ② 병역의무에 따른 군복무, 임신·출산 및 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한 자 중 학기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였으나 이후 시험(개별시험 포함)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출석시까지 부과된 시험성적, 출석성적, 과제물 평가성적 등으로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2013.11.11., 2016.10.31., 2018.1.2. 개정)

- ③ 제35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개별시험에 대한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성적을 산출할 수 있다.(2016.10.31. 신설)

- ④ 학기 중 자퇴한 학생의 경우는 해당 학기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강일이 지나서 자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018.1.2. 신설)

**제40조(서울캠퍼스 성적평가)** ① 모든 과목의 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급(A+, A°)은 40% 이내로 한다.(2020.1.13. 개정)

- ② <2020.1.13. 삭제>
- ③ <2020.1.13. 삭제>
- ④ <2020.1.13. 삭제>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9명 이하 과목,

군사학관련과목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목은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0.1.13. 개정)

- ⑥ 타교 교류학생, 외국인 학생, 체육특기자 학생, 장애학생(장애등급 1~4급)의 경우 상대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2008.4.8.신설, 2009.1.5 개정)

- ⑦ 제1항의 성적등급별 분포 내에서 등급내 비율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2008.8.1.신설, 2011.8.10., 2020.1.13. 개정)

**제40조의2(경주캠퍼스 성적평가)** ① 모든 과목의 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교양과목 및 전공교과목의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급(A+, A°)은 25%이내, A등급(A+, A°)과 B등급(B+, B°)은 70% 이내로 한다. 단, 교양(필수) 영어 교과목 등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별도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2014.8.18., 2018.1.2. 개정)

- ③ 교직과목 및 의학계열 분과 전공교과목의 성적등급별 분포는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A등급(A+, A°)은 25% 이내로 하며, B등급 이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2014.8.18 개정)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강생 9명 이하 과목, 실험실습과목(의학계열 포함), 군사학관련과목 등은 상대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1.6.23. 개정)

- ⑤ 타교 교류학생, 외국인 학생, 체육특기자 학생, 장애학생(장애등급 1~4급)의 경우 상대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⑥ 제2항 및 제3항의 성적등급별 분포 내에서 등급내 비율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2.]

**제41조(급락표시)** 일부과목은 성적의 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급락만을 표시한다. 이때 급제는 P, 낙제는 F로 표시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2018.1.2. 개정)

**제42조(학점인정)** 학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D0급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한번 인정한 학점이라도 그것이 착오나 부정행위에 의하여 그 취득이 인정되었을 경우나 재수강을 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의 인정을 취소하며, 동일과목의 이중취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3조(평점평균)** ① 평점평균의 산출은 다음과 같으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다.(2018.1.2. 개정)  
수강신청과목학점 × 취득평점

수강신청학점수

② 백분율 환산법 및 백분율 환산범위는 따로 정한다.(2006.12.18.신설)

**제44조(성적공시)** ① 성적은 최종시험 종료 후 7일 이내에 과목 담당교수가 3일간 공시한다.

② 공시기간중 이의 있는 성적은 과목 담당교수의 확인을 거쳐서 수정할 수 있다.

③ 경주캠퍼스는 중간시험 종료 후 중간시험 성적을 소정의 기간에 공시할 수 있다.(2017.5.15. 신설)

**제45조(성적정정)** ① 통지된 학기말 성적을 정정코자 하는 자는 성적통지서에 정해진 정정기간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2020.3.18. 개정)

1. 성적정정원(소정양식)
2. 정정사유서(담당교수 또는 착오발생 책임자)
3. 사유를 증빙하는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

② 성적의 정정은 그 착오의 원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1. 교수의 평가와 기재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2. 사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3. 컴퓨터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4. 기타 착오의 책임이 학생에게 귀속하지 않는 경우

③ 총장은 감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재난상황으로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적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적정정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2020.8.23. 신설)

## 제 10 장 지각 및 결석

**제46조(무단결석)** ① 특별한 사유없이 해당 과목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과목의 성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2018.1.2. 개정)

② 8학기 이상(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또는 7학기) 재학생이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결석 허용한계 초과 시, 학생은 증빙서류를 단과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고,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목 담당교수는 제1항

적용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6.10.31., 2020.3.18. 개정)

**제47조(지각환산)** 3회의 지각은 1회의 결석으로 환산한다.

**제48조(유고결석)**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결석 시 사유발생 1주 이내에 학사운영실을 경유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교과목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8.2.26., 2020.3.18. 개정)

유 고 결 석 사 유	결석허용 한계
1.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2. 제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3.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당일부터 7일(공휴일 포함) 당일부터 3일(공휴일 포함) 2주
4.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5. 교육실습 및 각 학교 학습여행·야외실습 참가	징병검사일 및 해당기간 해당기간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해당기간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8. 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기간
9.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 제 11 장 우등, 성적경고 및 유급

**제49조(우등)** ① 한 학기에 15학점 이상(졸업학점이 140학점인 대학은 18학점, 140학점 이하인 대학의 4학년은 12학점, 160학점인 대학은 20학점 이상으로 한다.)취득하고, 평점평균이 4.0이상이며, 품행이 방정한 자는 학기우등생으로 인정한다. 다만, 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를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2006.12.18. 2010.9.8. 개정)

② 재학기간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F등급인 과목이 없으며, 전 학년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는 우등졸업생, 4.2이상인 자는 최우등졸업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성적경고를 받은 자 및 편입학한 자(캠퍼스 간 이동(전과)자 포함)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2006.12.18., 2017.4.3. 개정)

- ③ 학기우등생, 우등 및 최우등졸업생은 이를 학적부에 기재한다.

**제50조(성적경고)** ① 학장은 매 학기말 성적 평점 평균이 1.75미만(경주캠퍼스 1.5미만, 한의(예)학과, 의(예)학과는 1.75미만으로 한다)인 자에게 성적경고 처분을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성적경고 적용 요건을 따로 정한다.(2006.12.18., 2017.2.20., 2018.1.2. 개정)

- ②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경우 본인 또는 학부모에게 성적경고에 대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매학기 말 성적경고 처분을 한다.

③ 학장은 성적경고의 처분으로부터 3일 이내에 본인과 보호자에게 처분의 내용을 통고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성적경고 처분에 관한 사항은 학적부에 기록한다.

⑤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은 카운슬링센터(경주캠퍼스는 학생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2.18.신설, 2014.11.1., 2019.8.21. 개정)

**제51조(유급)**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학업성적이 매우 불량한 자는 해당학년에 유급시킬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12 장 전공결정, 전과

**제52조(전공결정)** ① 학부(계열)별로 입학한 자는 소정기간 내에 소속 학부(계열)의 전공 중에서 희망전공을 선택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전공결정은 1학년 2학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2006.12.18. 2007.12.11. 개정)

③ 대학별 전공결정 방법, 기준, 일정 등은 해당대학 학부(과)장 회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하며, 학장은 그 원칙에 따라 학생들의 전공을 결정하고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희망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희망학생의 수가 수업여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 등 학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⑤ 자유전공학부로 입학한 자는 의학계열·사범계열 및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전공)

중에서 희망전공을 선택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1.9.29. 개정)

**제53조(전과)** ①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는 5학기 까지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전과할 수 있으며, 전과신청기회는 총 3회로 정하며, 전과는 전입 받는 학과(전공) 입학정원의 50%(사범계열은 별도로 정함)한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2006.12.18. 2007.12.11. 2009.6.26. 2010.2.2. 개정)

② 캠퍼스 간 이동(전과)는 2학년 2학기 재학 중 이면서 4학기 이수 중인 자로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1회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이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2009.11.6.신설, 2010.10.05. 2011.3.2 개정)

1. 의학계열 학과(간호학과 포함), 사범계열 학과로의 이동(2010.10.05. 신설)
2. 학과(전공)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학한 자의 이동(2010.10.05. 신설)
3. 전과 이력이 있는 자의 이동(2010.10.05.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전과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한의학(예)과, 의학(예)과, 간호학과, 약학과, 글로벌무역학전공, 연극학부, 스포츠문화학과, 융합보안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글로벌무역학과로의 전과. 단, 미래융합대학 학과 간 전과는 허용 가능 (2011.5.18, 2013.11.11, 2014.12.31., 2015.10.12., 2017.1.2., 2017.4.3., 2019.8.8. 개정)

2. <삭제 2009.6.26>

3. <삭제 2007.12.11>

4. 학과(전공)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학한 자의 전과

④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전과원을 전입하고자 하는 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2020.3.18. 개정)

⑤ 전과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통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필기시험을 과할 수도 있다. 다만, 예·체능계 학과(전공)은 실기시험을, 사범계열 학과는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한다.

⑥ 전입 받는 대학의 학장은 전과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무학생처장(경주캠퍼스는 교무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교무학생처장(경주캠퍼스는 교무처장)은 총장의 최종승인을 얻어

확정 공고한다. 전과가 허용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2019.8.21. 개정)

- ⑦ 전과한 학생은 전과한 학과(전공)에서 정한 교양 및 전공과목 이수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제 13 장 복수전공, 부전공

**제54조(신청과 허가)** ① 복수전공(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포함)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2016.8.22., 2020.1.13. 개정)

② 캠퍼스간 복수전공은 소속 학과(전공)의 졸업예정자에 한해 가능하다.(2007.12.11. 신설)

③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매학기 재학기간 중 소정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시 성적 제한은 두지 않는다.(2016.8.22. 개정)

- ④ 복수전공 심사시 신청자의 학업성적 및 별도의 평가요소를 둘 수 있다.(2016.8.22. 신설)

⑤ 복수전공의 허가는 전입 받는 학과(전공)의 수업연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2016.8.22. 개정)

⑥ 한의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글로벌무역학전공, 연극학부, 스포츠문화학과, 약학과에 대한 복수전공 이수는 허가할 수 없다.(2007.12.11, 2013.11.11., 2014.12.31., 2016.8.22., 2017.1.2., 2017.4.3. 개정)

⑦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 복수전공의 경우, 소속 학과 간 복수전공 및 타 단과대학으로의 복수전공 이수는 허가할 수 있다. 단, 타 단과대학에서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로의 복수전공 이수는 허가할 수 없다.(2017.4.3. 신설)

⑧ 사법계열 학과의 복수전공 이수는 비사법계 재학생중 교직원과정 이수자와 사법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2016.8.22., 2017.4.3. 개정)

⑨ 복수전공을 추가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직전 복수전공의 이수학점이 신청학기의 취득 예정학점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2016.8.22. 신설, 2017.4.3. 개정)

**제55조(학점인정)** ① 2개 이상의 전공이수로 전공 간 중복되는 과목은 6학점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다. 단, 부전공은 제외되며, 경주 캠퍼스 융합전공의 중복학점 인정범위는 별

도로 정한다.(2010.10.25., 2016.8.22., 2021.3.4. 개정)

② 복수전공 허가 이전에 이수한 복수전공의 교과목도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한다.(2016.8.22. 신설)

**제56조(이수포기)** ① 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간에 복수전공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2006.12.18., 2016.8.22 개정)

② 복수전공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복수전공 포기 신청이 없더라도 학장이 강제 취소할 수 있다.(2006.12.18.신설)

③ 복수전공을 포기한 경우 이전에 이수한 복수전공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2016.8.22. 신설)

**제57조(학위인정)** ①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소정의 학점이상 이수하는 등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복수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소속 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

② 복수전공중인 자가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복수전공의 이수를 마치기 위해 졸업연기를 희망할 경우 2개 학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캠퍼스간 복수전공의 이수학기는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2007.12.11. 신설)

④ 학과(전공)별 복수전공 최저이수학점은 따로 정한다. (2016.8.22. 신설)

**제58조(부전공)**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제1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복수전공에서 21학점 이상 취득하였으나 복수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 해당 복수전공을 부전공으로 전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교직·법학과의 복수전공은 부전공으로 전환을 인정하지 않는다.(2017.1.2. 개정)

## 제 14 장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제59조(연계전공)** ① 연계전공의 신청 및 허가, 학점인정, 이수포기, 학위인정에 관한 사항은 복수전공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연계전공의 운영은 연계전공PD가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연계전공PD는 연계전공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연계전공 교육과정의 편성은 연계전공PD가 주관하되, 2개 이상의 학과(전공) 단위에서 개설된 교육과정(교과목)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며 교육혁신처장(경주캠퍼스는 교무처장)이 통할한다. 다만, 신설 과목의 편성이 불가피할 경우 교육혁신처장(경주캠퍼스는 교무처장)은 교무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를 결정한다. (2016.8.22., 2019.8.21. 개정)
- ④ 연계전공의 개·폐설, 허가인원 및 허가기준은 수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되, 개·폐설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연계전공개설(폐설)신청서를 교육혁신처장(경주캠퍼스는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혁신처장(경주캠퍼스는 교무처장)은 교무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공의 타당성, 교육과정 등을 심사·보완 후 개·폐설을 승인한다. 다만, 연계전공 운영 평가를 통해 지속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혁신처장(경주캠퍼스는 교무처장)은 교무연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설을 결정할 수 있다.(2016.8.22., 2019.8.21. 개정)
- ⑤ 연계전공 최저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6.8.22. 신설)

**제59조의2(융합전공)** ① 융합전공을 신설하려는 학과(전공)는 소정의 신청 서류를 융합전공을 설치하려는 기관의 장(단과대학장 또는 융합교육원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기관의 장은 교육혁신처장(경주캠퍼스는 교무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20.8.23. 개정)

- ② 융합전공의 신청 및 허가, 학점인정, 이수포기, 학위수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13.]

**제60조(학생설계전공)** ① 학생설계전공의 신청 및 허가, 학점인정, 이수포기, 학위인정에 관한 사항은 복수전공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016.8.22. 개정)

- ② 이수 허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혁신처장(경주캠퍼스는 교무처장)은 학생설계전공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2019.8.21. 개정)
- ③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득한 학생설계전공신청서(소정양식)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제출시 교육과정은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기존의

개설과목으로 54학점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2016.8.22. 신설, 2020.3.18. 개정)

- ④ 지도교수는 학생설계전공의 교육과정을 변경 및 보완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서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고 교육혁신처장(경주캠퍼스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는다. (2016.8.22. 신설, 2019.8.21., 2020.3.18. 개정)
- ⑤ 학생설계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매학기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의 지도 및 수강 승인을 받는다. (2016.8.22. 신설)
- ⑥ 학생설계전공 최저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2016.8.22. 신설)

## 제 15 장 <장 삭제 2009.8.28>

제61조 내지 제65조 <삭제 2009.8.28>

## 제 16 장 휴학 및 복학

**제66조(일반휴학)** ① 가정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자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보호자가 연서한 소정양식의 일반휴학원을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8.1.2., 2020.3.18. 개정)

- ② 학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 10일 이내에 보호자가 연서한 소정양식의 일반휴학원에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0.12.27 개정)

③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원을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0.3.18. 개정)

- ④ 제3항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약학과는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병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2학기까지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1.9.29. 개정)

⑤ 1학년 1학기 중에는 질병 또는 군 입대의 사유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2021.1.15. 개정)

- ⑥ <2013.2.22 삭제>

**제67조(병사휴학)** ① 입영명령서(영장)에 의하여 군에 입대하여야 하는 자는 입대 10일전까지 소정양식의 군입영신고서에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0.3.18. 개정)

② 병사휴학 절차를 밟지 않은 자는 제적 처리되며 일반휴학기간 중에 병사휴학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로 병사휴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병사휴학의 기간은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④ 병사휴학한 자가 입영과 동시에 귀가조치 되었을 때는 귀가조치 후 5일 이내에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신고하여야 한다.(2020.3.18. 개정)

⑤ <2013.2.22. 삭제>

**제67조의2(임신·출산 및 육아휴학)** ①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0.3.18. 개정)

②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로 하며,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2학기로 한다. 다만, 여학생 본인의 임신·출산 및 육아휴학의 기간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1.11.]

**제67조의3(창업휴학)** ①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창업교육센터(경주캠퍼스는 벤처창업보육센터)를 경유하여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4.8.18., 2020.3.18., 2020.9.22. 개정)

② 창업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되,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원을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4.4.28., 2020.3.18. 개정)

③ 창업을 위한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11.11.]

**제68조(복학 시기와 절차)** ①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자(전역 예정자 포함)는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복학원을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군에 복무중인 자는 해당학기의 수업결손이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할 수 있으며, 전역예정일까지 전역하고, 전역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복학이 취소된다.(2012.4.2., 2018.1.2., 2020.3.18. 개정)

1. 질병휴학자 : 건강진단서 1통

2. 입영휴학자

가. 전역증(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사본 2통  
나. 주민등록초본 2통

② 병사휴학 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할 수 없는 자는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복학원을 제출한 후 일반휴학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0.3.18. 개정)

**제69조(복학 허가 및 등록)** ① 휴학기간 중 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을 원할 경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학과(전공)의 학생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2014.10.13., 2018.2.26. 개정)

② 학기 중에 병역의무에 따른 군복무, 임신·출산 및 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한 자의 수업일수가 학기의 4분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학기의 과목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2013.11.11., 2018.1.2. 개정)

③ 복학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정의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면 그 허가는 취소된다.(2020.8.23. 개정)

## 제 17 장 조기졸업

**제70조(조기졸업)** 조기졸업은 성적이 우수하고, 기타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가 6학기 또는 7학기로 해당학과(전공)의 학위를 받는 제도이다.

**제71조(신청과 허가)** 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6학기 초 또는 7학기 초 정해진 기간 내에 소정의 지원서를 소속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2020.3.18. 개정)

② 한의학(예)과, 의학(예)과 학생 및 편입학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2008.8.1. 개정)

**제72조(졸업요건)** ①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도 학칙 제51조의 졸업요

- 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 ② 조기졸업에 필요한 성적은 6학기 또는 7학기 평점평균이 4.2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 학·석박사통합연계과정을 이수 중인 자의 평점평균은 3.5이상으로 한다.(2020.8.23. 개정)

## 제 18 장 졸업논문

**제73조(졸업논문)** ① 졸업논문은 학과(전공)에 따라서 논문, 실험실습보고서(조사보고서 포함), 실기작품발표, 졸업종합시험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졸업논문 제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전공)는 학과(전공)교수회 심의 후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논문 이외의 방법으로 졸업논문을 과하는 학과(전공)일지라도 학생의 희망에 따라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논문이나 실험실습보고서 등의 주제는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복수전공 포함)에 해당하는 것이라야 한다.

**제74조(용어의 정의)** ① 「논문」이라 함은 연구 결과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서면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실험실습보고서」라 함은 실험실이나 실습장에서의 연구결과 또는 사회조사연구의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③ 「실기발표」라 함은 실제적인 기능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④ 「졸업종합시험」은 답안지를 통하여 실력을 시험하는 것을 말하며 전 3개항의 방법을 택할 수 없는 학과(전공)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5조(지도교수)** ① 학장은 매 학기초 학부(과)장의 제청을 받아 소속 학과(전공)의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위촉한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2010.12.27 신설)

**제76조(제출시기)** ① 졸업논문은 6학기부터 제출할 수 있으며, 7학기말까지 지정된 양식 및 규격에 따라 작성한 후 지도교수의 승인 후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7학기에 졸업논문이 통과되지 못한 자는

졸업예정 학기에 논문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77조(제출방식)** ① 실기발표를 제외한 모든 졸업논문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정본의 부분 2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습보고서 및 실기발표를 제외한 모든 졸업논문은 개인연구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8조(실기작품 발표)** ① 실기작품 발표는 7학기말까지 학부(과)장이 정한 장소·일시·절차 등에 따라 공개발표로 시행한다.

② 실기작품 발표는 개별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기작품 발표가 불가능한 자는 발표 3일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기발표연기신청서를 학부(과)장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발표일의 연기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9조(심사위원)** ① 제출된 졸업논문은 2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심사하여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은 학장의 승인을 받아 학부(과)장이 선정하며, 지도교수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소속 학과(전공) 교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 학과(전공) 교원이 아닌 위원은 1/2을 초과할 수 없다.

**제80조(심사)** 심사판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동의(2인일 경우는 전원일치)로 하며, 합격은 P로, 불합격은 F로 표시한다.

**제81조(기록과 보관)** 합격된 졸업논문의 제목은 학적부에 기재하며, 해당 학과에서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2006.12.18.개정)

## 제 19 장 외국어 시험 및 영어강의 이수요건 (2006.12.18.개정)

**제82조(이수기준)** ① 서울캠퍼스 소속 학생은 다음의 외국어시험 및 영어강의 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학칙 제51조 2항 1호의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06.12.18. 2010.1.25. 개정)

1. <별표3>에서 정한 외국어시험에서 아래 점수에 상응하는 점수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단과대학(학과, 전공)은 특성에 따라 <별표3>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외국어시험 이수 기준(중국어, 일어, 한문 등)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별도 설정 시 졸업사정을 위하여 교무학생지원팀과 협의를 거쳐 교양외국어센터로 기준을 통보하여야 한다.(2006.12.18, 2007.3.28, 2008.4.8, 2008.10.13, 2009.1.5, 2011.5.18, 2012.1.11., 2013.4.8., 2014.4.28., 2015.10.12., 2017.1.2., 2018.1.2., 2018.2.26., 2019.8.21., 2019.9.16. 개정)

대학(학과,전공)	외국어 시험	비고
불교대학(승려)	토익 600점	
불교대학 문과대학(영어문학전공, 영어통번역 학전공제외) 이과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글로벌무역학전공 제 외) 경찰사법대학 경영대학 바이오시스템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체육교육과제외) 예술대학(미술학부, 연극학부, 스포츠 문화학과 제외) 약학대학	토익 700점	
영어문학전공	토익 750점	
영어통번역학전공	토익 800점	

2. 학문기초 외국어 영역의 6학점 추가 이수 및 해당 영역 평점평균 3.5이상 취득자는 외국어 시험 대체 신청 절차 완료에 따라 외국어시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2018.1.2. 신설)
3. 2007학년도 신입생부터 영어강의를 4과목(교양 및 전공 각 2과목)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단과대학(학과,전공)은 특성에 따라 4과목 이상의 강화된 이수 기준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수기준 충족을 위한 영어강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2006.12.18.신설, 2009.1.5., 2009.2.24. 개정, 2018.1.2. 제2호에서 이동)
4. 2011학년도 2학기 이후 외국인전형 입학생은 토익(국립국제교육원 주관)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어시험 이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인영어시험성적으로 입학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2014.4.28. 신설, 2018.1.2. 제5호에서 이동, 2020.7.2., 2020.10.29. 개정)

5. <2018.1.2. 제4호로 이동>
  - ② 경주캠퍼스 소속 학생은 외국어 졸업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학칙 제51조 2항 1호의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10.1.25. 개정)

**제83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주관하는 시험의 성적으로 하며, 본교 입학전에 취득한 것도 인정한다.(2006.12.18. 2007.3.28. 2008.4.8., 2014.1.23 개정)

1. 외부 공인시험
  - 가. 토익(시사YBM 주관)
  - 나. 토플(한미교육위원단 주관)
  - 다. 텡스(서울대 텡스관리위원회 주관)
  - 라. IELTS(주한영국문화원 주관)
2. 교양외국어센터
  - ② 취득한 시험성적표는 별도의 신청서와 함께 졸업 해당학기 2개 학기 전까지 교양외국어센터(외국인전형 입학생은 글로벌인재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교 교양외국어센터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통과된 학생은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06.12.18, 2007.3.28, 2008.4.8., 2013.5.6., 2014.1.23., 2014.4.28., 2020.3.18. 개정)
  - ③ <2009.2.24 삭제>

**제84조(영어강의)** ① 영어강의는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과목으로 교육과정표 또는 강의시간표에 “영어강의”라고 명기된 과목을 말하며, 영어강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2006.12.18.신설, 2014.4.28 개정)

② 일어일문학과중어중문학과 소속 학생은 해당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를 이수함으로써 영어강의 이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2006.12.18.신설, 2014.4.28. 개정)

**제85조(적용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학생은 외국어졸업요건(외국어시험 및 영어강의 이수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2006.12.18, 2008.4.8, 2013.4.8, 2014.4.28, 2014.12.31., 2015.10.12., 2017.1.2 개정)

1. 군위탁생, 북한이탈주민, 시간제등록생, 시각·청각언어 장애학생, 재외국민전형 및 영어우수자전형 입학생
2. 외국인전형 입학생을 제외한 글로벌무역학전공, 체육교육과, 미술학부, 연극학부, 스포츠문화학과, 융합보안학과, 사회복지상담학



- 과, 글로벌무역학과 소속 학생(2017.1.2., 2019.8.8. 개정)
- ②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사범대학 전체학과 소속 학생, 외국인전형 입학생은 제82조 2호 영어강의 이수요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2008.5.23. 신설, 2014.4.28. 개정)

## 제 20 장 학위수여

- 제86조(학위수여)** ① 학칙과 이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은 졸업을 인정하고 <서식 1>에 따라 졸업증서(학위)를 수여한다.(2009.11.6 개정)
- ②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의 전공표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우등 및 최우등졸업생의 경우 이 사실을 학위증에 기재한다.
- 제87조(수료인정)**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학칙과 이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수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료만을 인정하고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졸업논문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자
  2. 외국어 Pass제를 통과하지 못한 자
  3.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수료를 신청한 자(2011.8.10 신설)
- 제88조(공학교육인증)** ① 한국공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공학교육인증을 받은 학과(전공)에서 공학교육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공학교육인증 취득한 것으로 한다.
- ②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과 비인증프로그램의 명칭은 <별표1>, <별표2>, <별표1-1>, <별표2-1>과 같이 구분한다.(2006.12.18.신설, 2009.1.5, 2010.9.8, 2011.3.2., 2011.8.10., 2014.10.13., 2020.8.23. 개정)
- ③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21 장 명예졸업장

- 제89조(대상과 자격)** 본교 재적자(在籍者)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학교발전 또는 교위선양에 크게 공헌한 자
  2. 국위선양에 크게 공헌한 자

3. 의사상자(義死傷者)

**제90조(수여절차)** 명예졸업장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대학장이 추천하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1. 추천서
2. 공적조서(증빙서류 첨부)
3. 기타 추천에 필요한 자료

**제91조(수여시기)** 명예졸업장은 본교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

## 제 22 장 평생교육사 과정

**제92조(이수신청서)** 이수희망자는 소정기간에 이수신청서를 사범대학 학사운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2020.3.18. 개정)

**제93조(이수학점)** 이수희망자는 평생교육관련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 중에서 30학점(과목당 3학점 인정기준)이상을 취득하고, 평생교육실습 등 필수과목 5과목을 필하여야 한다.(2015.5.21 개정)

**제94조(실습)** ① 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한 당해 학기에 최소 4주간(최소 20일 이상)으로 총 160시간 이상 실시한다.(2015.5.21 개정)

② <2015.5.21 삭제>

③ 실습은 평생교육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에 이수 신청 할 수 있다.(2015.5.21 신설)

④ 실습에 소요되는 경비는 이수자가 부담한다.

**제95조(자격증발급)** ① 재학 중 소정의 평생교육사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 총 평점평균이 80점 이상인 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2015.5.21. 개정)

② 평생교육사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졸업 해당학기에 사범대학 학사운영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20.3.18. 개정)

③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평생교육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다.(2015.5.21 신설)

## 제 23 장 시간제 등록학생

**제96조(지원자격과 선발)** ① 일반 사회인들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시간제 등록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다.

- ② 선발은 일반 학생들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학생(통합반)과 시간제 등록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학생(별도반)으로 분리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매학기 초 4주 이내에 시행한다.(2013.4.8., 2018.1.2. 개정)
- ③ 지원자는 소정의 입학원서와 증빙서류를 전형료와 함께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고사 성적으로 한다.

**제97조(등록과 선발취소)** ①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출된 서류와 납입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전형에 합격하였어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입학지원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전염병, 유전병 기타 질환으로 수학에 지장을 주는 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98조(이수와 학점취득)** ① 일반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함께 이수하며, 매 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2012.01.11 개정)

- ② 시간제 등록학생에게 학생증 및 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별도로 학적을 관리한다.
- ③ 시간제 등록학생은 본교의 학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9조(편입학 허가)** 편입학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0조(학점인정)** ① 본교에서 시간제 등록학생으로 수학하였던 자가 본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전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학점의 1/4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학칙 등에서 정한 바대로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01조(학위수여 요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1. 84학점 이상을 본교에서 취득하고, 각 학과(전공)의 졸업이수요건을 충족한 자(2006.12.18., 2017.1.2. 개정)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 시 요구되는 교양 30학점 이상

및 전공 60학점 이상을 포함한 140학점을 인정받은 자(2017.1.2. 개정)

## 부 칙 (2006. 1. 25.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내규)**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학(예)과, 한의학(예)과 등과 같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① 제15조(신청 및 이수학점)의 적용에 있어서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축소됨에 따라 정상적인 수료학점 취득이 어려운 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3학점까지 추가 이수할 수 있다.

② 제20조(재수강) 제1항은 2006학년도부터 이수한 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제82조(기준 점수)의 적용시 2001년부터 2005년 신입생과 2003년부터 2005년 편입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불교대학의 경우 2002년부터 2005년 신입생과 2004년부터 2005년 편입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 부 칙 (2006. 10. 9.개정)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6.12.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조(편입학) 제4항 편입학한 학생의 전적학교 취득 학점에 대한 인정은 2007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성적경고) 제1항은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82조(이수기준) 편입생은 해당학년 신입생의 기준을 적용한다.

④ 제88조(공학교육인증) 제2항은 2007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07.03.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제83조(외국어시험) 제2항 시험성적표 제출시기는 2008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②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부서명, 직위명의 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07.12.11.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7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8.4.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3조(외국어시험) 제2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84조(이수기준)와 제85조(적용예외)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개정규정은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 부 칙(2008.5.23.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8.8.1.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8.10.13.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8. 11. 1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4항과 제5항은 2009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11조 제5항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부 칙(2009.1.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하며, 제40조 제5항, 제82조, 제83조 3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개정 시행세칙의 '외국어시험' 기준을 적용하며, 2008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개정전 규정의 외국어시험 기준을 적용한다.

### 부 칙 (2009.2.2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3조 3항의 개정에 따라 200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졸업대상자로서 외국어시험 성적요건을 충족치 못한 자를 위해 대체강좌(학생이 희망할 경우 기초교양과정 영어프로그램 이수 가능)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강좌를 이수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부 칙(2009. 4. 15 개정)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6. 26. 개정)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08.28.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11.6.개정)

이 개정 학칙시행세칙은 2009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9. 12. 0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시행세칙은 2010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0.01.25.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2조 2항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 **부 칙(2010.02.02.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 7. 0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0조의2 개정시행세칙은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0. 9. 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학점과 성적인정) 개정 시행세칙은 2010학년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0. 10. 5. 개정)**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 10. 25.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0. 12. 27.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 3. 2.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 5.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3조 및 제82조는 개정일로부터 시행하되,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1. 6. 23.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 8.1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 및 제88조의 별표 1과 별표 2 개정내용은 2011년 2월 졸업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제82조 제1항 제1호 개정내용은 광고홍보학과 2012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③ 제87조 개정내용은 2011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1. 12. 20. 개정)**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2. 1.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0조(재수강) 개정 시행세칙은 2012학년도 이후 취득한 교과목의 재수강 성적평가부터 적용한다.

② 제20조의2(취득교과목 포기)제2항은 2012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③ 제82조(이수기준)제1항제1호 개정에 따른 <별표3> 공인인증시험 및 점수는 2012학년도 봄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2. 4. 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3. 2. 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3. 4. 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2조(이수기준) 제1항 제1호 개정내용은 2013학년도 신입생, 2014학년도 2학년 편입생, 2015학년도 3학년 편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96조(지원자격과 선발) 제2항 개정내용은 2013학년도 1학기 시간제 등록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3. 5. 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3. 7. 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3. 11. 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67조의 3(창업 휴학)은 2014학년도 1학기 휴학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3. 12. 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0조 제1항 개정 시행세칙은 2014학년도 이후 취득한 교과목의 재수강 성적평가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4. 1. 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4. 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0조(재수강) 제5항은 2014학년도 이후 취득한 교과목부터 적용한다.

② 제82조(이수기준) 제1항 제1호 개정내용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82조(이수기준) 제1항 5호와 제85조(적용 예외) 개정내용 중 외국인전형 입학생 개정내용은 2011학년도 2학기 외국인전형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종전규

정을 적용한다.

④ 제84조(영어강의) 제2항은 독어독문학과 재적생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⑤ 제85조(적용 예외) 제1항 제2호는 문예창작학과 재적생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⑥ 제85조(적용 예외) 제2항은 국어국문학과 재적생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 부 칙 (2014. 8. 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의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현장실습의 학점인정)의 개정내용 중 학점인정을 위한 기준 학점은 2014학년도 여름계절학기부터 적용한다.

2. 제20조의2(취득교과목의 포기) 개정 내용은 2015학년도 이후 취득한 교과목부터 적용한다.

3. 제40조의2(경주캠퍼스 성적평가) 개정 내용은 2014학년도 2학기 성적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4. 10. 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40조(서울캠퍼스 성적평가)에 대한 부분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4. 11. 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4. 12. 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8조(전공과목), 제53조(전과), 제54조(신청과 허가) 개정내용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85조(적용 예외) 개정내용은 2014학년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5. 5. 2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5. 7. 2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5. 10. 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3조(전과)와 제54조(신청과 허가) 개정내용은 서울캠퍼스 스포츠과 학과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제82조(이수기준)과 제85조(적용 예외) 개정내용은 서울캠퍼스 스포츠과학과 재적생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 부 칙 (2016. 2. 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20조의 2(경주캠퍼스 취득교과목의 포기) 개정사항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6. 8. 2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59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내용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6. 10. 3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7. 1. 7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7. 2. 20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7. 4. 3 개정)

제1조(시행일)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27조의 4(군 복무 중 원격수업)의 개정내용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7. 5. 15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8.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개정 시행세칙 제41조(급락표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적용일 이전 취득한 F는 평점에 포함한다.

② 제40조의 2(경주캠퍼스 성적평가)의 개정내용은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8.2.26. 개정)

제1조(시행일)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 내용 중 제69조 제1항은 2017년 2학기 복학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18.9.1.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4.30.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8.8.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8.21.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9.16.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1.13.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3.18.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4.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 등에 따른 휴학적용 특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국가적 예방조치 등으로 인해 정상적 학사참여가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제66조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휴학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20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통산 휴학가능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부 칙 (2020.7.2.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8.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20조 제1항 개정 내용 중 경주캠퍼스에 관한 사항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5(학습경험인정 등) 신설 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제72조(졸업여건) 제2항 개정내용은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0.9.22.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10.29. 개정)**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1.1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1.3.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5조(학점인정) 제1항 개정 내용은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1.3.2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4.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 제2항 제8호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1.7.12.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개정 내용은 2021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21.9.2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52조(전공결정) 제5항 개정 내용은 2022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개정 시행세칙 중 제66조(일반휴학) 제4항 개정 내용은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되,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편입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1> 서울캠퍼스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심화과정) 명칭

단과 대학	학부 (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단과 대학	학부 (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단과 대학	학부 (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2011년 2월 졸업생까지 적용			2011년 8월 졸업이후 적용			2014년 2월 졸업이후 적용
공과 대학	전자 공학과	- 전자공학심화 - 전자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onics Engineering	공과 대학	건축 공학부	- 건축공학심화 - 건축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공과 대학	건축 공학부	- 건축공학심화 - 건축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전기 공학과	- 전기공학심화 - 전기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ical Engineering		산업 시스템 공학과	- 산업시스템공학심화 - 산업시스템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산업 시스템 공학과	- 산업시스템공학심화 - 산업시스템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과	- 토목공학심화 - 토목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Engineering		사회환경 시스템 공학과	- 건설환경공학심화 - 건설환경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건설환경 공학과	- 건설환경공학심화 - 건설환경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건축 공학부	- 건축공학심화 - 건축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2015년 2월 졸업이후 적용	
	생명화학 공학과	- 생명화학공학심화 - 생명화학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Chemical & Biochemical Engineering		기계 공학과	- 기계공학심화 - 기계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로봇에너지 공학과	- 기계공학심화 - 기계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2011년 8월 졸업까지 적용			화공생물 공학과	- 화공생물공학심화 - 화공생물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Chemical Engineering		*2013년 2월 졸업이후 적용	
기계 공학과	- 기계공학심화 - 기계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화공생물 공학과	- 화공생물공학심화 - 화공생물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Chemical Engineering					
정보 산업 대학	컴퓨터 공학과	- 컴퓨터공학심화 - 컴퓨터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IT부	정보통신공학전공	- 정보통신공학심화 - 정보통신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컴퓨터보안학	정보통신공학전공	- 정보통신공학심화 - 정보통신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산업시스템 공학과	- 산업시스템공학심화 - 산업시스템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Industrial & Systems Engineering						컴퓨터공학전공
	정보통신 공학과	- 정보통신공학심화 - 정보통신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Information Communication Engineering		컴퓨터공학전공	- 컴퓨터공학심화 - 컴퓨터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별표1-1> 경주캠퍼스 공학교육 인증프로그램(심화과정) 명칭

단과 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단과 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단과 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2014년 2월 졸업생까지 적용			2014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			2015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과학기술대학	정보통신공학부	- 정보통신공학심화 - 정보통신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자연과학계열	정보통신공학과	- 정보통신공학심화 - 정보통신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자연과학계열	정보통신공학과	- 정보통신공학심화 - 정보통신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단과 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단과 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단과 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2017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			2018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			
과학기술대학	전자-정보통신공학과	- 정보통신공학심화 - 정보통신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과학기술대학	전자-정보통신공학과	- 정보통신공학심화 - 정보통신공학심화(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별표2> 서울캠퍼스 공학교육 비인증프로그램(일반과정) 명칭

단과 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단과 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단과 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2011년 2월 졸업생까지 적용			2011년 8월 졸업이후 적용			2014년 2월 졸업이후 적용
공과 대학	전자공학과	- 전자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공과 대학	건축공학부	- 건축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공과 대학	건축공학부	- 건축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전기공학과	- 전기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기계공학과	- 기계공학 - 기계공학(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Mechanical Engineering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 기계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 사회환경시스템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 사회환경시스템공학 -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Civil and Environmental System Engineering		건설환경공학과	- 건설환경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건축공학부	- 건축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산업시스템공학과	- 산업시스템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산업시스템공학과	- 산업시스템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생명화학공학과	- 생명화학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전기공학과	- 전자전기공학 - 전자전기공학(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ical Engineering		항공생물공학과	- 항공생물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기계공학과	- 기계공학 - 공학사		항공생물공학과	- 항공생물공학 - 공학사		전자전기	- 전자전기공학 - 전자전기공학(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공학부	공학전공	-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ical Engineering
정보산업대학	컴퓨터공학과	- 컴퓨터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IT학부	전자공학전공	- 전자전기공학 - 전자전기공학(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ical Engineering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 정보통신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산업시스템공학과	- 산업시스템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컴퓨터공학전공	- 컴퓨터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컴퓨터공학전공	- 컴퓨터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정보통신공학과	- 정보통신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별표2-1> 경주캠퍼스 공학교육 비인증프로그램(일반과정) 명칭**

단과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단과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2014년 2월 졸업생까지 적용			2015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
과학기술대학	정보통신공학부	- 정보통신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자연과학계열	정보통신공학과	- 정보통신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단과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단과대학	학부(과)	(국문프로그램명, 국문학위명칭, 영문학위명칭)
		2017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			2018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
과학기술대학	전자-정보통신공학과	- 전자-정보통신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과학기술대학	전자-정보통신공학전공	- 전자-정보통신공학 - 공학사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별표3> 공인인증시험 및 점수

토익	토플 CBT	토플 IBT	텡스	TOEIC Speaking	OPIc	Cambridge e ESOL	IELTS	G-TELP
550	136	57	436	120	IL	PET	4.5	LEVEL3 63
600	177	62	478	120	IL	PET	5	LEVEL3 71 LEVEL2 50
620	182	64	494	130	IM1	PET	5	LEVEL3 73 LEVEL2 53
650	192	68	521	130	IM1	PET	5	LEVEL3 78 LEVEL2 57
680	200	72	551	140	IM2	FCE	5.5	LEVEL3 82 LEVEL2 61
700	207	76	600	140	IM2	FCE	5.5	LEVEL3 85 LEVEL2 64
800	227	87	728	150	IM3	FCE	6	LEVEL3 99 LEVEL2 76

<서식1>

<국문학위기>

제 호

학 위 증

(최우등졸업)

성 명 ○ ○ ○

생년월일

위 사람은 아래 전공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전공 ○○○(○학사)

○○○(○학사)

○○○(○학사)

부전공 ○○○

20 년 월 일

동 국 대 학 교 총 장 (인)

학위번호 :



*This diploma makes known that*

# Dongguk Universi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as conferred upon*

○○○ ○○○ ○○○  
*the degree of*

**Bachelor of** ○○○ **in** ○○○○○○  
**Bachelor of** ○○○ **in** ○○○○○○

*all the rights, privileges, and honors thereto appertaining.*

*In witness whereof we have hereto affixed the signature of the president.*

*Given at Dongguk University this ○○○○ day of ○○○○, ○○○○*

(서명)

○○○ ○○○ ○○○

*PRESIDENT*